



www.humanrights.go.kr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학교폭력 처리과정에서의 분쟁 완화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 일 시 | 2016. 10. 31. 14:00 ~ 16:30
| 장 소 | 국가인권위원회 11층 인권교육센터
| 주 최 | 국가인권위원회



학교폭력 처리과정에서의 분쟁 완화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프로그램

- ▣ 일 시 : 2016. 10. 31. 14:00 ~ 16:30
- ▣ 장 소 : 국가인권위원회 11층 인권교육센터
- ▣ 주 최 : 국가인권위원회
- ▣ 사 회 : 김성준 국장(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

시간	프로그램	비고
13:30-14:00	등록 / 개회	
14:00-14:20	<발표 1> 학교폭력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현황과 사례 • 박광우 팀장(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팀)	
14:20-14:40	<발표 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사건 처리의 문제점과 대안 • 문영희 교수(서울기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4:40-15:00	휴식	
15:00-16:00	<지정토론> • 정민재 사무관(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 전수민 변호사(서울시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 탁경국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교육위원) • 박숙영 센터장(좋은교사운동 회복적 생활교육센터) • 현미미 상담실장(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 이유미 단장(푸른나무 청예단, 학교폭력 SOS 지원단)	
16:00-16:30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16:30	폐회	

학교폭력 처리과정에서의 분쟁 완화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차 례

- <발표 1> 학교폭력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현황과 사례 1
 - 박광우 팀장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팀)

- <발표 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사건 처리의
 문제점과 대안 19
 - 문영희 교수 (서울기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지정토론> 43
 - 정민재 사무관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45
 - 전수민 변호사 (서울시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47
 - 탁경국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교육위원) 55
 - 박숙영 센터장 (좋은교사운동 회복적 생활교육센터) 63
 - 현미미 상담실장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75
 - 이유미 단장 (푸른나무 청예단, 학교폭력 SOS 지원단) 79

학교폭력 처리과정에서의 분쟁 완화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학교폭력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현황과 사례

박광우 팀장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팀)

학교폭력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현황과 사례



▣ 박광우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팀 팀장)

1. 진정사건 현황

가. 인권위에 접수된 학교폭력 진정사건 현황

최근 6년간(2010. 1. 1. ~ 2016. 8. 31.)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각급 학교관련 진정 사건(총 2,557건)중 학교폭력과 관련된 진정사건은 약 16.46%(421건)을 차지<표-1>하고 있음.

<표-1> 연도별 학교폭력 진정사건 접수 현황(2010.1.1.~2016. 8.31.)

연 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8월기준	계
건 수	36	44	116	63	64	73	29	421

진정인을 기준으로 피해자측이 진정한 경우는 292건(70%)으로 가해자측 126건(30%) 보다 압도적으로 많음. 피진정인 비율을 보면 학교장이 288건(60%)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교사 154건(32%), 교육청 36건(7%), 경찰 4건(1%) 순임.

위 진정사건의 처리결과를 보면 각하 110건(26%), 기각 289건(69%), 인용권고 10건(2%), 조정성립 2건, 합의종결 10건(2%)임. 합의종결은 조사관의 중재 등으로 당사자가 사안을 원만하게 해결하기로 합의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고 종결한 경우임.

<표-2> 진정사건 처리결과(2010.1.1.~2016. 8.31.)

각하	기각	합의종결	인용권고	조정성립	계
110	289	2	10	2	421

나. 학교폭력 진정사건의 유형

위 진정사건 421건을 진정요지별로 구분하면 사건에 따라 진정요지가 다수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총 사례는 618건인데, 이를 내용별로 보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 이전단계(288건, 47%), 학폭위 진행과정(50건, 8%), 학폭위 결정관련(91건, 15%), 학폭위 사후조치 관련(18건, 3%), 관련 법령과 제도관련(171건, 28%) 등 5개로 대분류할 수 있음.

<표-3> 진정사건 대분류별 유형(2010.1.1.~2016. 8.31.)

대분류	항목수	비율
학폭위 이전	288	47%
학폭위 진행과정	50	8%
학폭위 결정 관련	91	15%
학폭위 사후조치	18	3%
관련 법령과 제도관련	171	28%
합계	618	100%

1) 학폭위 이전 단계

학폭위 이전 단계에서 발생한 사건중 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이 가장 많은 유형은 학교폭력에 대한 소극적 대처가 126건(44%)이고, 조사과정에서의 강압적 조사와 인격권 침해(73건, 25.3%), 조사 미흡(17건, 6%), 과잉 대응(14건, 5%), 학부모 참여 미흡(14건, 5%), 피해사실 공개(12%, 4%), 가해사실 공개(12건, 4%) 등의 순임.

<표-4> 학폭위 이전 단계 진정사건 유형(2010.1.1.~2016. 8.31.)

대분류	소분류	항목수	비율
학폭위 이전	소극적 대처	126	44%
	과잉대응	14	5%
	조정절차 미비	2	1%
	격리 미흡	3	1%
	동의없는 대질	1	0%
	피해사실 공개	12	4%
	부당 격리	3	1%
	사과 강요	3	1%
	가해사실 공개	12	4%
	조사 미흡	17	6%
	강압적 조사(진술(서)강요 등)	34	12%
	강압적 조사(야간조사 등)	4	1%
	학부모 참여 보증 미흡(조사사실 미통지 등)	14	5%
	조사과정에서의 인격권 침해	35	12%
조사과정에서의 수업권 침해	8	3%	
합계		288	

위와 같은 분류에 따른 유형별 진정요지는 다음과 같음.(진정요지는 진정인의 주장에 따른 것임)

<표-5> 학폭위 이전 단계 진정사건 유형별 요지(2010.1.1.~2016. 8.31.)

유형	피진정인	내용
소극적 대처	학교장	피해자는 xxxx. x월부터 x월까지 10여명의 학생들로부터 폭행, 따돌림을 당한 바, 학교는 이를 묵인방관하고 xxxx. x월 경 피해사실을 알렸음에도 학교폭력사안으로 조치하지 않음.
과잉대응	학교장	당사자끼리 화해된 학교폭력사안에 대해 피진정인 이 직권을 남용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하여 xxxx. x월 피해자 진학결정이 나왔음.
조정절차 미비	학교장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가해자와 중재가 되지 않을 경우 양 당사자의 중재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하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유형	피진정인	내용
격리 미흡	학교장, 교감, 담임교사	xxxx. x월 담임교사에게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으나 가해자와 곧바로 분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스런회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실신하여 병원에 실려감.
동의없는 대질	교사	피진정인은 xxxx. x월 피해자가 원하지 않음에도 학교폭력 사안의 중재를 위하여 피해자를 가해학생 7명과 대질시켜 집단 상담을 강요함.
피해사실 공개	교사	피해자의 언어폭력 등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는데, 학교 조사 과정에서 학교 측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등에 의해 신고 내용이 다른 학생들에게 공개 되었음.
부당 격리	학교장	피진정인 학교장이 학교폭력인 가해자인 진정인의 자녀를 3일 동안 교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상담실에만 있도록 하는 등 과도한 격리조치로 직권을 남용하였음.
사과 강요	학교장	집단따돌림 등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된 5명 중 한 명에게 조사과정에서 피해학생에게 본의 아니게 사과를 강요하였음.
가해사실 공개	학교장, 교감, 학생부장	xxxx. x월 학교측에서 피해자가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소문이 있던 가운데 공개 방송으로 학생을 호출한 것은 가해학생과 관련한 자료 누설 행위로 비밀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임.
조사 미흡	학교장	피해자는 편향된 조사로 학폭위 조치를 받았고 이러한 사실이 학생들에게 퍼져 놀림을 받았음.
강압적 조사 (진술 강요 등)	학교장	조사과정에서 관련 학생들을 몇 시간 동안 교실 바닥에 꿰어 앉혀 놓고 자술서를 쓰도록 강요하여 가해사실을 인정하는 허위 진술서가 초기에 작성되게 하였음.
강압적 조사 (야간조사 등)	학교장, 교감, 교사	학교폭력 피해자를 심야에 조사하고 부모에게 통보하지 않음.
학부모 참여 보장 미흡	학교장	피진정인은 학교폭력 신고 접수 즉시 관련학생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함에도 통보하지 않았음.
조사과정에서의 인격권 침해	교사	피진정인이 조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안한 것을 한 것처럼 취조하시듯이 몰아세워 억울해서 눈물이 난다.’라고 하니 피진정인이 ‘너한테 취조하는 거 맞다.’라고 하며 위협감과 공포분위기를 조성함.
조사과정에서의 수업권 침해	교감, 교사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5명의 학생들에게 수업시간이나 식사시간에 진술서를 받고 조사를 진행한바, 이는 수업권 및 건강권침해임

2) 학폭위 진행 과정

학폭위 진행 과정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이 가장 많은 유형은 가해사실을 기정사실화하는 등 편파적 진행이 21건(42%)이고, 위원구성 등 학폭위 운영 하자(9건, 18%), 의견진술 기회 미부여(9건, 18%), 방어권 보장 미흡(8건, 16%), 강압적 신문(3건, 6%) 등의 순임.

6_ 학교폭력 처리과정에서의 분쟁 완화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표-6> 학폭위 진행과정 진정사건 유형(2010.1.1.~2016. 8.31.)

학폭위 진행과정	학폭위 운영 하자(운영위원 구성 등)	9	18%
	편파적 진행(가해사실 기정사실화 등)	21	42%
	강압적 심문	3	6%
	방어권 보장 미흡(정보 제공 미흡 등)	8	16%
	의견진술 기회 미부여	9	18%
합계		50	

위와 같은 분류에 따른 유형별 진정요지는 다음과 같음.(진정요지는 진정인의 주장에 따른 것임)

<표-7> 학폭위 진행과정 진정사건 유형별 요지(2010.1.1.~2016. 8.31.)

유형	피진정인	내용
학폭위 운영 하자	학교장	관련법에 따라 학폭위 위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나 회의 개최 시 위원 소개를 하지 않은 것은 기피신청권리 침해임.
편파적 진행	학교장	피해자가 놀림을 받으면서 폭행을 당하였으나, 학폭위를 편파적으로 운영하여 가해자에게 유리한 행위를 하고 있음.
강압적 심문	교감, 학생주입	학폭위 회의도중 가해자들이 폭행사실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주입이 피해자에게 “어디를 맞았냐? 누가 어떻게 때렸냐? 세워서 때렸냐?” 등 강압적 질문을 함.
방어권 보장 미흡	학교장	피진정인이 학폭위 개최에 앞서 충분한 고지를 않아 제대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해 결국 중한 처분을 받았음.
의견진술 기회 미부여	학교장	학폭위 개최 시 피해자와 보호자가 참석하지 못한바 적법절차 위반임.

3) 학폭위 결정 관련

학폭위 결정과 관련 위원회 진정이 접수된 91건중 82건(90%)이 결정이 부당하다는 것이고 나머지 9건(10%)은 결정 내용 공개가 부당하다는 것임.

<표-6> 학폭위 결정관련 진정사건 유형(2010.1.1.~2016. 8.31.)

학폭위 결정관련	결정 부당	82	90%
	결정 공개(비밀누설 등)	9	10%
합계		91	

위와 같은 분류에 따른 유형별 진정요지는 다음과 같음.(진정요지는 진정인의 주장에 따른 것임)

<표-7> 학폭위 진행과정 진정사건 유형별 요지(2010.1.1.~2016. 8.31.)

유형	피진정인	내용
결정 부당	학교장	피해자는 얼굴에 상처가 나는 학교폭력을 당하였는데 학폭위에서 가해 학생에게 전학조치를 하지 않고 경미한 처벌만 내렸음.
결정 공개(비밀누설 등)	학교장	피진정인이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내에 게시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격권이 침해당함.

4) 학폭위 사후 조치 관련

학폭위 결정 사후조치와 관련 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은 피해자 입장에서 결정이행이 미흡하다는 진정과 가해자 입장에서 결정 이행을 강제하였다는 진정이 각각 6건(33%)이고 후속조치 미고지 4건(22%), 정보 공개 거부 2건(11%)순임.

<표-8> 학폭위 사후 조치 관련 진정사건 유형(2010.1.1.~2016. 8.31.)

학폭위 사후조치관련	결정 이행 미흡	6	33%
	결정 이행 강제	6	33%
	후속조치 미고지	4	22%
	정보 공개 거부	2	11%
합계		18	

위와 같은 분류에 따른 유형별 진정요지는 다음과 같음.(진정요지는 진정인의 주장에 따른 것임)

<표-9> 학폭위 진행과정 진정사건 유형별 요지(2010.1.1.~2016. 8.31.)

유형	피진정인	내용
결정 이행 미흡	학교장	학폭위에서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서면사과’ 조치를 내렸으나 가해학생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음.
결정 이행 강제	담임교사	학교폭력 사건으로 강제전학 결정이 되었고 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함. 위 과정에서 당사자가 거부할 경우 행정심판 전까지 강제전학 조치를 보류하여야 함에도 강제로 전학조치를 하게 하였음.
후속조치 미고지	학교장	피진정인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조치사항을 피해자의 부모에게 통지하면서 관련 법령에 의한 불복절차를 고지하지 않았음.
정보 미공개	교사, 교육감	진정인이 학폭위 회의록 등 각종 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비공개 결정함.

5) 관련 법령과 제도 관련

학교폭력 법령과 제도관련 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은 피해자 보호 조치 미흡이 148건(87%)으로 압도적으로 많고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조치 의무화, 생활기록부 기재 관련이 각각 7건(4%), 학폭위 필요적 개최 6건(4%), 학폭위 조치에 대한 불복 수단 미흡 3건(2%)등의 순임.

<표-10> 학폭위 사후 조치 관련 진정사건 유형(2010.1.1.~2016. 8.31.)

관련 법령과 제도 관련	학폭위 필요적 개최	6	4%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조치 의무화	7	4%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7	4%
	조치에 대한 불복수단	3	2%
	피해자 보호 미흡	148	87%
합계		18	

위와 같은 분류에 따른 유형별 진정요지는 다음과 같음.(진정요지는 진정인의 주장에 따른 것임)

<표-11> 학폭위 진행과정 진정사건 유형별 요지(2010.1.1.~2016. 8.31.)

유형	피진정인	내용
학교폭력 자치위원회의 필요적 개척	학교장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관련 교육부 고시에 의하면, 가해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하여 피해학생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피해학생이 화해에 응한 경우, 피해학생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거나 가해학생이 그 이전에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학폭위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사안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가 화해하였는데도 단지 피해자의 부모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학폭위에 회부함.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조치 의무화	학교장	학폭위에서 학교폭력 가해자로 인정되어 서면사과 및 특별교육 5시간 이수 처분을 받았는데 피진정인들은 이 사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 앞에서 서면사과서를 읽게 하여 인격형성과정에 있는 이 사건 피해자의 자존심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였음.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학교장	전년도에 발생한 학교폭력 사실을 이번년도 생활기록부에 기재한 것은 부당함.
조치에 대한 불복수단	학교장	행정심판 위원들로부터 졸업 후 가해자 취소에 대한 행정심판을 신청하면 무조건 각하된다는 이야기를 들음. 졸업 후에는 학생부 상의 가해자 처분이 삭제되고, 졸업 이후라 실익이 없어 그러는 것 같은데 억울하게 가해자가 되는 학생들에게는 부당한 조치임. 졸업여부와 상관없이 행정심판 청구기간 이내에 청구하면 정식 절차를 거쳐 판단해 줘야 함.
피해자 보호(학교배정 등)	교육장	가해자가 학폭위 결정으로 강제전학 조치되었는데 상급학교 진학 시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 인근에 배정된 것은 부당함.

2. 학교폭력관련 인권침해 진정사건 처리 사례

학교폭력 진정사건 중 인권침해로 인정된 대표적 사례는 다음과 같음.

1)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 미흡(사건번호: 12-진정-0054700)

○ 진정요지: 피해자는 뇌병변장애 2급으로 경기도 ○○소재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 바, 1학년 때인 2010년도 말 동료 학생들로부터 폭행 및 괴롭

힘을 당하여 등교하지 못할 정도로 피해를 입었고, 2011. 2.에 피해자가 학교에 다시 등교한 후, 가해 학생들의 추가적인 폭행 및 괴롭힘이 있었으나 피진정인은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 판단 요지: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학교에 계속 다니는 상황에 따른 적극적 격리 조치를 시행했다면 피해자의 피해 정도는 많이 완화되었을 것인데 학교 측의 대응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비춰볼 때 미흡한 보호조치라 할 것이며, 이는 「헌법」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 이에 학교장에게, 유사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교직원을 대상으로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2) 불공정한 학교폭력 대처(사건번호: 12-진정-0338800)

- 진정요지: 피해자가 인종차별적 놀림을 받으면서 폭행을 당하였는데 학교장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편파적으로 운영하여 불공정한 결정을 한 것이 부당함.
- 판단 요지: 학교폭력에는 인종비하적 모욕의 경우를 별도로 예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자치위원회가 인종차별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진정인의 경우 인종차별적 발언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자치위원회 결정과는 별도로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이에 학교장에게, 학교내 인종차별적 발언의 예방적 차원에서 전체 교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3) 부당한 학교폭력 위원회 개최 등(사건번호: 12-진정-0825400)

○ 진정요지:

가) 학교장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 결과를 학교폭력 가해자인 본 진정 피해자들에게 문서가 아닌 구두로 통보하였음

나) 학교폭력 담당 교사 등은 2012. 7. 13. 밤 12시 넘어 본 진정 피해자들을 조사하면서 이를 학부모들에게 알리지 않음.

○ 판단 요지:

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결과에 대한 서면통보를 누락하는 등 「행정절차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

나) 교사들이 만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보호자들에게 사전 통지하거나 보호자들의 동의도 받은 바 없이 야간조사를 실시한 행위는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교육부장관에게 학교폭력사건의 야간조사와 관련하여,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

○ 권고수용 여부: 교육부는 2015. 4. 20. 17개 시·도교육감에게 ‘학교폭력 관련 학생에 대하여 방과후 사안 조사를 실시할 경우 학생의 보호자들에게 통보할 것’에 대한 공문을 시행함.

4)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학내게시(사건번호: 13-진정-0790300)

○ 진정요지: 학교장이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내에 게시하여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함.

○ 판단 요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이를 통하여 청소년을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개인이 식별되지 않도록 하면서 사례의 소개만으로도 충분히 그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다른 수단, 예컨대 일정기간 동안 발생하였던 학교폭력의 사례를 교육에 활용하거나 다른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의 사례를 활용하여도 학교폭력의 예방이라는 목적 달성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도로 학교폭력 사례를 학내 게시판에 게시한 행위는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 주의조치와 감독교육청에 유사 사례 재발장지를 위한 사례 전파 권고(해당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 권고 사항 안내)

5)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부적절 조치(사건번호: 14-진정-0179200)

○ 진정요지: 담임교사가 학교폭력 조사과정에서 같은 반 학생들에게 아직 밝혀지지 않은 피해자에 대한 학교폭력 사실과 피해자에게 위로의 편지를, 담임교사에 대한 편지를 쓰게 하였는데 피해자에게는 험담이나 악담 등이 기재되어 있는 반면 담임교사에 대해서는 걱정하는 내용만 있었는데 이를 피해자와 학부모에게 전달함.

○ 판단 요지: 담임교사가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 및 진정인을 원망하는 내용 등이 담긴 반 학생들의 편지를 여과 없이 전달하였다. 비록 이런 행위에는 담임교사에 대한 아이들의 걱정 어린 마음 등을 진정인 및 피해자가 모두 알고 서로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교육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학교폭력 피해자를 세심하게 보호하여야 할 위치에 있는 교사가 학교폭력으로 정신적 상처를 입은 피해자에게 이러한 내용의 편지를 읽도록 한 것은 그 보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는 「헌법」제10조가 보장하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이에 해당 교사에게 직무교육, 관할 교육장에게 재발방지 대책 마련 시행 권고(해당 교육장 관할 각급 학교에 사례 전파 재발방지 공문 시행 회신)

6) 학폭위에서 피해자에 대한 강압적 질문(사건번호: 14-진정-1007400)

- 진정요지: 학폭위에서 폭행 당시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며 피해자에게 “어디를 맞았냐, 누가 어떻게 때렸냐, 세워서 때렸냐, 눕혀서 때렸냐? 똑바로 얘기해라, 때리던 애들 얼굴 보면 알겠느냐?” 등의 질문으로 따져 묻듯이 피해자를 겁박하였음.
- 판단 요지: ‘학교폭력 공동전담기구’의 일원으로서 상급학교 학생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파악하고 신고 후 불안해하는 마음을 정서적으로 지지하는 상담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임에도, 자치위원들이 반복되는 질문에 피해자가 힘들어 하는 것을 인지하고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질문을 계속한 것은 사안의 정확한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 방법이나 정도에 있어서 지나쳤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에게 정신적 불안감을 가중시킴으로써 「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
해당 교사에게 주의조치, 관할 교육감에 재발방지 대책 마련 시행 권고.(해당 교육감 각급 학교에서 대책 마련 시행 회신)

7) 학교폭력 사건 교사의 부적절한 대응(사건번호: 14-진정-1037000)

- 진정요지: 학교폭력 신고를 받고 교장실로 출동한 경찰관이 수업중인 피해자를 호출하여 조사하였고, 당시 교장실에 있던 교사들이 피해자를 경찰 조사 등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지 않았음.
- 판단 요지: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교장실에 출동한 당시에는 학교폭력 사안이 현장에서 진행되는 등 긴급한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만 13세의 미성년자로서 신뢰받는 자의 동석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인에 대하여 보호자의 동의 및 동석 등의 절차 없이 조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상당히 흥분하여 피진정학교를 방문한 학교폭력 관련 상대방 학생의 아버지와 동석시킨 것은 피해자 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

한편, 교사들은 학교라는 공간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책임이 누구보다 중하다고 할 것인바, 경찰의 요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긴급을 요하는 학교폭력 사안이 아니었음에도 수업 중에 있는 피해자를 데리고 오고,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전화로 연락했을 뿐 피해자 보호자의 동석 없이 상대학생 부모는 동석한 상황에서 경찰조사를 받도록 방치한 행위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야 할 교사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 또는 위압감을 느끼도록 한 행위로 판단하고 관할 교육감에게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각급 학교에 시행할 것 권고.

이에 교육감은 경찰 조사 시 학생보호와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 회신.

8) 학폭 신고 처리부당 및 거짓진술 강요(사건번호: 14-진정-1069000)

- 진정요지: 담임교사에게 피해자가 학교폭력을 당한 내용을 글쓰기장에 기록하여 제출했더니 담임교사는 해당 쪽을 가위로 잘라 가져갔고 이후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이 부인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글쓰기장에 착각한 것 같다고 쓰게 하였음.
- 판단 요지: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글쓰기장을 잘라내 가져가고 다음 날 바로 언어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과 대질시킨 후 해당 학생들이 부인한다는 이유로 언어폭력이 없었다고 성급하게 단정하였다. 이와 같이 피진정인이 관찰, 면담 등 간접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직접 당사자와 같은 반 학생들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대질조사까지 진행한 것은 당시 피해자의 정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적절하지 않은 조치로 보인다. 특히 피해자는 피진정인과 대화를 한 이후에 글쓰기장에 착각한 것 같다고 작성하였는데, 당사자는 물론 같은 반 친구들이 언어폭력이 없었다고 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해당 내용이 작성되었는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비록 사건목살의 고의성이 인정되지는 않지만 학교폭력에 대한 내용을 접한 피진정인이 취한 일련의 행위는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행복추구권 즉 피해자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이에 주의조치 권고.

9)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사건번호: 16-진정-0153800)

- 진정요지: 상급생이 하급생을 학교폭력한 사실로 전학조치되었는데 상급학교 진학 시 피해자가 재학중인 학교 인근에 배정된 것은 부당함.
- 판단 요지: 상급학교 배정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소극적으로 해석하여 가해학생을 피해자가 재학 중인 학교와 집 인근 학교에 배정한 행위는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판단. 이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국가는 모든 형태의 유기, 착취, 학대 등으로 인하여 희생이 된 아동의 신체적·심리적 회복 및 사회복귀를 촉진시키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조 및 제39조를 위반하고,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행위라 할 것 판단.

이에 해당 교육장에게, 학교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회복 및 치유를 위해 피해자와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하여 가해학생의 전학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할 것, 전국 시·도 교육감에게, 산하 교육지원청의 학교 배정 계획에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학교 급이 다른 경우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당사자 간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하여 배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교육부장관에게, 학교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위와 같은 배정 방안을 관련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

10) 학폭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소홀(사건번호: 16-진정-0233500)

- 진정요지: 7명의 가해학생에 의한 따돌림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하여, 상담교사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관련 학생들과의 집단상담을 강요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적극적인 개입을 하지 않았음.
- 판단 요지: 피해자와의 상담을 통해 피해자의 심리상태가 불안함을 인지하고 있던 가운데 피해자가 개인 상담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관련 학생들이 오니까 교실로 돌아갔었고, 관련 학생들과의 1차 대화 후에도 담임교사에게 관련 학생들과의 상담이 힘들다고 하는 등 집단 상담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련 학생들과 집단 상담을 2차에 걸쳐 진행하였음. 또한 집단 상담 당시 학생들과 같이 상담실 내에 있었고 몇 가지 대화원칙을 제시하기는 하였지만 대화 과정에 함께 참여하여 관련 학생들의 말이나 행동에 주의를 주는 등의 피해자 보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떨어져 앉아 있었음. 위와 같은 행위는 학교폭력(따돌림)사안에 관하여 피해자의 입장과 심리적·정신적 상태를 고려하지 못한 부적절한 조치로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조 및 제19조를 위반하고,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이 제시하는 절차도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 이에 학교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한 주의조치할 것, 교육감에게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한 관할 교육청 차원의 관리감독 조치 권고.


학교폭력 처리과정에서의 분쟁 완화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사건 처리의 문제점과 대안

문영희 교수 (서울기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p>「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사건 처리의 문제점과 대안</p>	
---	---

■ 문영희 (서울기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I. 머리말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 중후반부터 학교폭력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학교폭력은 일반 폭력과 달리 대부분 학교라고 하는 물리적 공간 내에서 구성원 간에 발생하기 때문에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동일한 공간에 있으면서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지속적으로 폭력에 노출되면서 폭력이 장기화·지속화되고, 그 피해사실이 동료들에게 그대로 노출됨으로써 피해학생들은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 또한 매우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¹⁾ 하지만 학교폭력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²⁾ 특히 청소년은 부모나 교사로부터 학대 또는 차별대우를 받거나 범죄피해를 당하거나 또는 친구와 갈등을 겪거나 기타 여러 가지 불행한 사건을 겪게 되면서 비행을 저지르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³⁾ 단순히 형사법의 적용을 통해 학교폭력행위자를 형사처벌하는 것만으로는 그 예방과 대책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관련 학계와 시민단체의 측구에 부응하여 학교폭력의 예방과 근절

1) 김병찬, “학교폭력문제 해결에 있어 교원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소고”, 『한국교원교육연구』 제29권 제3호, 한국교원교육학회, 2012, 32면 참조.
 2)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폭력의 원인으로 첫째, 학생의 인성 및 사회성 함양을 위한 교육적 실천의 미흡, 둘째, 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적절한 생활지도를 하기 어려운 교육 여건, 셋째, 보호자의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 부족, 넷째, 인터넷·게임·영상매체의 부정적 영향력의 증가 등을 들고 있다(국회입법조사처, “학교폭력 근절 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가해학생 선도 및 조치를 중심으로-”, 『NARS 현장조사보고서』, 2012, 22-30면 참조).
 3) Agnew, R. & T. Brezina, “Relational problems with peers, gender and delinquency”, *Youth & Society* 29, 1997, pp.84-111.

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2004년 1월 29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법률 제7119호, 2004.7.30. 시행, 이하 ‘동법’ 또는 ‘학교폭력예방법’이라고 한다)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⁴⁾

동법의 입법목적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학교폭력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담기구의 설치, 정기적인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학교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 등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려는 것”⁵⁾으로서 그 주된 목적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에 있다. 따라서 동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 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제1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동법의 제정과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범정부적인 대처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이 줄어들지 않자 2008년 3월 14일 전부개정(시행 2008.9.15., 법률 제8887호)을 포함하여 2015년 12월 22일 개정(시행 2016.6.23., 법률 제13576호)에 이르기까지 총 11차례의 개정(타법 개정 제외)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들 개정에서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에 주력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학교폭력의 유형을 확대하고 그 적용대상을 확장하였으며,⁶⁾ 학교폭력사건에 대해서는 자치위원회와 지역위원회, 행정심판으로 이어지는 쟁송절차를 마련하여 가해자에 대한 조치,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기타 분쟁조정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소년법과 일반 형사법과 다른 사건처리절차를 마련하였다.⁷⁾ 동법은 이외에도 학교폭력 예방 장치 마련(제4조 제1항), 국무총리 소속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구성(제7조), 학교폭력 조사 상담(제11조의2), 전문상담교사 배치(제14조),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제15조), 긴급전화의 설치(제20조의2), 학생보호 인력의 배치(제20조의5)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감, 학교 및 관련기관의 자원을 총동원한

4) 동법은 전문 20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다.

5) 법제처 홈페이지 참조(2016.10.19. 방문).

6) 전종익·정상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선 방안 연구 : 교육과 예방 및 회복 기능을 중심으로”, 『교육법학연구』 제25권 제1호, 대한교육법학회, 2013, 209-210면.

7) 김희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대한 비판적 검토-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소년보호연구』 제29권 제1호, 2016, 한국소년정책학회, 64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⁸⁾ 특히 최근 개정(2015년 12월 22일)에서는 연 2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학교폭력실태조사의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제11조 제8항)으로써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실태조사의 주기,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실태조사 관계 기관의 정보제공 의무 및 실태조사의 방법 등의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실태조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⁹⁾

이와 같이 동법은 학교폭력에 관한 최초의 독립법률로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하여 국가와 일선 학교로 하여금 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제도적·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가해자나 피해자가 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처벌보다는 교육적 차원에서의 교정을 목적으로 종래의 민·형사상 절차가 아닌 특별절차를 마련하였으며,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관한 제도적인 부분과 학교폭력이 발생한 후의 가해학생 조치 및 피해학생의 보호에 관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동법은 가해학생의 조치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보충적인 법률에 불과하여 동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형사처벌의 여지를 그대로 남아 있다는 점에서 분쟁조정절차를 비롯하여 동법상 사건처리절차가 법적 구속력도 가지기 어려우며, 징계조치를 통한 가해학생의 개선효과도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¹⁰⁾ 따라서 수차례에 걸친 동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미비점 등으로 인해 학교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이라고 하는 동법의 목적 달성과 배치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동법이 이러한 문제점을 갖게 된 근원적인 이유는 동법을 제정하게 된 입법연혁의 특수성으로 인한 혼란과 그 규범내용에 대한 정확한 정립과 인식이 결여된 채 입법한 것에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¹¹⁾

이에 본 발표에서는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주요부분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정방향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8) 김희균, 앞의 논문, 64-65면.

9)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실태를 연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동법 제11조 제8항).

10) 문영희/강동욱,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성격에 대한 검토 및 그 개정방향, 『법과 정책연구』 제15집 제1호, (사)한국법정정책학회, 2015, 24면.

11) 김혜경, “학교폭력에 대한 형사법적 접근의 제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조정법적 성격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24권 제4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3, 258면.

II. 학교폭력사건처리의 문제점과 그 개정 방안

1. 동법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동법은 전술한 것처럼 가해학생의 조치에 있어서는 다른 법률이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제5조)이기 때문에 동법에 의한 조치만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종결되는 것이 아니므로 동법상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만으로 그 개선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 것은 동법의 성격과도 관련성이 있다. 즉, 동법의 성격에 대하여 징계법인가 형사법인가의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동법은 징계법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¹²⁾ 왜냐 하면 동법의 입법목적이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에 있고, 그 조치의 주체가 학교장이며,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의 요청권자도 학교 내에 설치되어 있는 자치위원회일 뿐만 아니라 조치내용 또한 「형법」(제41조)상 형벌을 내용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법에 의하여 가해학생에게 징계조치가 행하여진 후에 다시 형사사법기관에 의하여 형사처벌되더라도 헌법 제13조 제1항 후단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는 되지 않는다. 하지만 가해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에게 가하여진 동법상 징계조치들이 비록 형벌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조치에 따라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거나 학생기록부에 조치를 받은 사실이 기록되면서 그로 인한 부정적 영향은 사실상 일반 성인들이 범죄 후 형벌을 받고 범죄자로 낙인이 찍혀 사회부적응자가 되면서 더 심각한 범죄자로 발전하게 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¹³⁾ 따라서 비록 가해학생에 대한 이들 조

12) 대부분의 학자들은 동법을 징계법으로 이해하고 있다. 권오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적용과 문제점”, 법학논고 제43권,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85면; 김종구·박지현, “또래괴롭힘(bullying)의 개념과 법적규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일감법학 제27권,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328-329면; 박윤기,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81면(동, 박윤기, “학교폭력에 대한 법·정책적 연구”,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2년도 제3호, 한국지방정부학회, 2012, 273-274면); 박찬걸, “학교폭력대책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 소년보호연구 제15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10, 97면; 이승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개정내용 및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제23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161면; 이진국,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체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입법정책 제1권 제1호, 한국입법정책학회, 2007, 104-105면; 정한중,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희법학 제44권 제1호, 경희대학교 경희법학연구소, 2009, 76-78면; 정현미,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법제의 개선방안”, 소년보호연구 제20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12, 251면; 조상제, “학교폭력과 회복적 사법”, 안암법학 제41권, 안암법학회, 2013, 333면 등

치가 가해학생의 교육·선도를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신중한 적용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동법이 원칙적으로 학교폭력사건 처리를 위한 기본법으로서 기능하게 하고, 따라서 동법에 의한 조치가 결정되고, 이것이 그대로 행하여질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학교폭력사건이 종료되고, 이후에 다시 사법적 처리를 할 수 없는 법적 효과를 부여하게 할 필요가 있다. 다만, 동법상 학교폭력사건 처리절차에 이러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와 피해학생의 보호에 관한 규정이 보완되어야 한다.

첫째, 동법 개정과정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과 단속을 강화해 온 것은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여론을 반영하여 일선 형사법기관에서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하여 형사처벌 강화해 온 것에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러한 동법의 개정 경향은 가해학생의 교육·선도를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자 하는 동법의 입법목적과는 모순되며, 학교폭력의 예방측면에서 보면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학교폭력은 학생 간에, 학교 내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¹⁴⁾가 많기 때문에 처벌위주의 접근만으로는 그 효과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더구나 학교폭력의 경우 가해자는 성인범죄자로 발전 가능성이 많은 만큼 처벌강화나 학교나 사회에서의 격리하는 것만으로는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특히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가해학생의 교육·선도를 위한 조치로서 기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해학생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깊은 반성과 깨달음을 가져 올 수 있는 수단이어야 하는데 형사처벌의 강화가 과연 이러한 수단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학교폭력의 경우 가해자는 대부분 학생이므로 우리 사회의 책임도 적지 않고, 이들이 성인범죄자로 발전할 가능성도 많은 만큼 이들의 처벌을 강화하거나 학교나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만으로는 적절한 대책도 될 수 없다. 따라서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있어서는 형사법적 접근 보다는 교육적 접근을 우선하여야 한다.¹⁵⁾

13) 문영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가해학생 조치에 관한 비판적 검토, 「법과 정책연구」 제14집 제4호, (사) 한국법정책학회, 2014, 1908-1909면.

14) 가해학생들의 폭행 등은 거의 대부분 학교 휴식시간 중에 일어나고 있다(청소년상담소식, 2012. 02. Vol. 118.). 장소적으로는 심각한 학교폭력은 주로 옥상/스쿨버스/기숙사/동아리방 등 CCTV 및 교사들의 사각지대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제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학교폭력은 ‘힘의 불균형’이 일어나는 곳, 즉 교사가 없는 사각지대에서 많이 일어난다”며 “점심, 저녁시간, 쉬는 시간 등 학교폭력의 ‘사각지대’ 대해서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경향신문, 2014. 10. 22기사 참조).

둘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한 법적 규제에 있어서는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의 균형유지가 중요하다. 가해학생이 다른 한편에서는 피해자인 경우도 있으며, 성장과정에 있는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에 대한 법적 처벌은 어디까지나 교육적 판단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선도·교육의 일차적 책임이 있는 학교현장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또한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이 법집행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르는 것을 막고, 선도·교육이 전문성이 없는 개인적인 관점에 좌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있어서는 그 판단기준을 구체화¹⁵⁾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여야 하고, 그 처분의 내용이나 기간 및 절차 등에 대하여도 법령이나 지침 등을 통해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정하여 두어야 한다. 이것은 가해학생들이 학교폭력으로 인해 자신들이 받을 처분에 대하여 예측가능하게 함으로써 헌법상 요구되는 적법절차의 요청에도 합치하며,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이라고 하는 동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셋째,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그 경중에 관계없이 범죄자로 낙인을 찍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학교폭력은 폭력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그로 인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범죄이다. 그러나 학교폭력은 아직 미성숙한 아동기·청소년기 학생들의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발생하거나 대부분 특별한 의도나 목적이 없이 발생한다. 이 같은 학교폭력은 적절한 교육의 부재가 원인이기도 하며, 입시 위주의 교육정책으로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인성교육이 배제되어 있는 결과이기도 하다. 따라서 학교폭력을 가해 학생들만의 잘못으로 몰아가는 것은 우리 사회의 책임 있는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 물론, 심각한 학교폭력을 행한 가해학생은 응당 그에 마땅한 죄값을 치러야 한다. 그러나 아동기·청소년기의 학생들이 성장과 인격형성 과정에서 특별한 의도나 목적이 없이 한때의 철없는 실수에 의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비행·일탈에 해당되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학생기록부에 남기고, 유지하는 것조차 가해학생에게 낙인효과를 줄 수

15) 현실적으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동일한 공간에서 활동하고 있고, 학교폭력을 신고한 것이 알려질 경우에는 학생들 간의 문제를 교사 등에게 알렸다는 사실만으로도 신고자가 다른 친구로부터 비겁자나 배신자로 따돌림을 당할 우려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신고를 하도록 강요하여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시도는 교육적 차원에서 보면 적합하지 않은 면도 있으므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16) 2013년 교육부가 마련한 전술 세부기준안을 바탕으로 하여 보다 전문가의 참여 하에 구체적이고 상세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있기 때문에 이들의 처벌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왜냐 하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성인범죄자로 성장하게 되는 악순환으로 연결 될 수 있기 때문이다.¹⁷⁾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동법상 가해학생 조치에 관해서는 다음의 점에 대한 보완이 요구된다. 즉, ①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의 주체가 학교장이라는 점을 주목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재량권의 확대, ② 서면사과는 가해학생의 반성을 이끌어 내기 위한 유용한 처분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서면사과가 반복해서 이용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민·형사 절차에서의 증거활용 금지에 대한 법적 보완, ③ 교육감이 정한 특별교육기간과 치료기간의 수업일수 산입, ④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징계는 어디까지나 선도·교육에 목적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형사제재와 동일한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사회봉사’는 ‘봉사활동’으로 용어의 재정립, 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처분에 있어서 학교장의 자의적인 처분을 방지하기 위해 출석정지기간에 대한 세부기준의 제시, 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피해학생의 유책성에 대한 사유의 명시 의무화, ⑦ 장애학생 보호를 위한 가중 처벌에 있어서 획일적 기준이 아닌 피해사례별 조치기준의 마련, ⑧ 학생부 기재사항 보존기간의 최소화 및 기재사실 누출 금지 등이다.¹⁸⁾

2. 동법의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최근 학교폭력사건에 관한 하나의 사례를 보면 동법과 관련지침 등을 통해 피해학생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지만 여전히 학교현장에서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서울 노원구 소재 모 중학교의 한 학생은 수개월간 자신에게 거듭된 동학년생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경찰에 신고를 했다. 하지만 담임교사는 자신에게 먼저 말하지 않은 피해학생을 나무랐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물론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17) 학생기록부에는 가해학생의 징계사항뿐만 아니라 긍정적 변화 모습도 학생부에 함께 기재하여 낙인효과를 방지함으로써 상급학교 진학, 취업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가해학생 중에는 일부 정신건강상 문제(분노조절장애, 심각한 공격성, 소시오 패스가 의심될 정도의 도덕정서의 결함 등)를 보이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있어서는 개인적 일탈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가해학생이 처한 환경적인 면도 같이 고찰하는 접근을 해야 한다.

18) 문영희, 앞의 논문, 1926-1927면 참조.

징계조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오히려 담임교사는 학교폭력 발생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대질 심문을 실시하였고, 또한 피해학생이 과거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 말더듬으로 인한 언어장애 4급 등으로 따돌림을 당한 경험을 들어 “피해학생이 부족하다”는 뜻을 비추어 사건의 원인을 피해학생에게 돌리려고까지 하였으며”.¹⁹⁾ 교육부의 기본적인 대처방안 조차 지키지 않았던 것이다.²⁰⁾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것은 동법이나 관련지침 등에서 가해학생의 조치나 분쟁해결에 대해 중점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피해학생의 보호에 관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에도 그 원인이 있다. 따라서 피해학생의 보호와 피해의 최소화 및 빠른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학생의 권익보호와 피해회복을 위한 내용의 보완이 시급히 요구된다. 특히, 피해학생이 겪게 되는 정신적 피해는 더욱 심각한 실정에 있으므로 신체적 피해에 대한 치료 외에 이들에 대한 심리상담·치료 등에 대해서도 국가적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동법에서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제2조 제1호).²¹⁾ 그러나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구제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폭력행위로 인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폭력행위의 성질이나 정도에 따라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있을 수 있는 행위라면 동법의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피해학생에 대하여 보호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객관적으로 피해를 수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가 있으면 폭력을 당한 학생이 그 피해를 부정하지

19) 헤럴드 경제, 2016. 10.12.

20) “현재 교육부 학교폭력 예방 홈페이지 ‘도란도란’에는 학교폭력에 대한 올바른 대처방안으로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하거나 목격한 학생이 신고한 경우 그 행동을 칭찬하고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지지하고 격려해줘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보복으로 인한 폭력의 강도가 심해질 수 있는 만큼 성급하게 가해·피해학생을 대질시켜서는 안되며, 설령 학생이 말한 학교폭력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더라도 피해학생을 지지해주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야기를 꺼낸 학생에게 어떤 결점이 있더라도 해결을 도와주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도 명시하고 있다. 결국 담임 교사는 교육부가 공정한 기본적인 대처방안조차 지키지 않았던 셈이다”(헤럴드 경제, 2016. 10.12. 기사 참조).

21) 동법에서 학교폭력의 개념을 확대하여 새로운 유형의 폭력행위를 포함시키는 것은 피해학생의 보호강화를 위해 바람직한 태도라고 할 것이다.

않는 한 피해발생을 인정하는 것으로 입법화하여 동법의 적용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²²⁾ 이것은 형법상 폭행은 거동범으로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만 있으면 범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보다 조화된다.²³⁾

한편, 동법에서는 피해학생에 대해 다양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6조 제1항²⁴⁾과 제16조의2).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피해학생에 대한 구제에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으므로 피해학생의 조기 회복과 올바른 성장을 위하여 피해학생에 대해서 일반범죄 피해자에 준하는 구제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한 필요가 있다.²⁵⁾ 현행법상 가해학생이 형사법상 범죄자가 되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한 피해학생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적용대상인 ‘범죄피해자’²⁶⁾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법적 구조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나 피해학생의 경우에는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신체적 치료 외에도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치료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은 그 행위가 사실상 범죄에 해당하지만 학생의 신분을 감안하여 형사처벌 대신에 동법에 의한 징계조치를 부과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동법에서 범죄피해자에 준하여 가해학생의 형사처벌과는 관계없이 학교폭력의 피해학생도 일반범죄 피해자에 준하는 규정을 두어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게 함으로써 법적 구제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거나 피해학생이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보호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따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니면 「범죄

-
- 22) 김혜경, “학교폭력에 대한 형사법적 접근의 제한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조정법적 성격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24권 제4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3, 273면)에서는 학교폭력의 개념은 그러한 범죄군의 특징을 목적으로 하거나 행위자의 행위를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므로 이들 행위의 미수범도 포함된다고 한다.
- 23) 동법상 학교폭력의 개념정에서 ‘학생’의 범위에는 제도권 밖의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폭력행위도 규율할 필요가 있으나 제도권 외의 광범위한 범위의 학습자들을 일괄적으로 규율하기는 무리가 있다. 하지만 동법상 보호대상인 학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연령·지위·소속 단체의 특성·위계질서의 존재·폭력행위의 구조·경위 등을 종합 고려하여 확대할 필요가 있다(이용식, “학교폭력관련 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년보호연구』, 제28권 제3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15, 91면 참조).
- 24)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로는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이 있다. 그리고 학폭위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애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6조의2 제2항).
- 25) 문영희/강동욱,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 및 피해자보호제도에 관한 비판적 검토와 그 개선방안”, 『법과 정책』 제21집 제1호, 2015 참조.
- 26)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제3조 제1항 제1호).

피해자 보호법」을 개정하여 그 적용대상에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포함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²⁷⁾

3.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학교폭력과 관련한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이하 ‘학폭위’라 한다)의 역할에 대해서는 동법 제16조와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학폭위의 대표적인 기능은 분쟁조정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동법에서는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동법 제18조 제1항)로 규정하고 있어서 학폭위의 분쟁조정이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연유로 인해 학폭위는 학교폭력에 대하여 미온적으로 대처하게 되고, 이러한 미온적 대응은 결국 학교폭력 처리결과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²⁸⁾ 나아가 실제 사례를 통해서 보더라도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모두 학폭위의 운영 및 결정에 반발하고, 학폭위의 결정으로 인해 오히려 갈등이 증폭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²⁹⁾

이미 학교현장에서도 중등교장연수 등을 통하여 피해자 분쟁조정을 위해 정부 차원의 제3의 학교폭력 조정 기관의 필요성과 ‘따돌림 강요에 의한 괴롭힘’ 등 정신적 폭력의 증가에 대해 학폭위의 적극적 대응이 미흡한 것으로 자체평가하면서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이나 학부모들까지 충분히 인식하고 공감을 받는 기구의 설치를 필요로 하는 논의가 있어 왔다.³⁰⁾ 또한 정부의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내용 중에도 학

27) 최근 교사에 대한 학생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동법에서 학교 내외에서의 학생에 대한 폭력으로 확대한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학생의 대교사폭력도 그 적용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피해교사에 대한 법적 보호조치로서 이들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치료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동지, 이용식, 위의 논문, 90면 참조).

28) MBC 뉴스, 2016.10.02.; “아직까지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 측이 은폐·축소시키려는 경향이 있다”면서 “담당교사가 도와주지 않으면 학교 내에서 학교폭력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경찰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워 학교의 적극적인 신고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경남신문, 2012.03.15일자,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021991> 참조).

29) 한유경 외, “학교폭력 대책 강화에 따른 단위학교 사안 처리과정에서의 갈등 분석, 『교육과학연구』 2013 참조. 국가인권위원회 자료(2015년)에 따르면 학교폭력과 관련한 진정사건 618건 중 학폭위의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51건(8%), 학폭위의 결정관련은 91건(15%)으로 나타나고 있다.

30) 2008년 1기 중등교장연수; 2012년 중등교장자격 연수 제2기 기획역량평가(학교폭력 사안의 학교장조치-[daum 카페 참조](http://cafe.daum.net/2008gyojang/DFgd/19?q=%C7%D0%B1%B3%C6%F8%B7%C2%BF%A1%20%B4)(<http://cafe.daum.net/2008gyojang/DFgd/19?q=%C7%D0%B1%B3%C6%F8%B7%C2%BF%A1%20%B4> 참조).

교장과 교사의 역할을 강화하는 동시에 책임도 늘려 학교폭력을 은폐하려다 발각되면 교장과 관련 교원은 ‘4대 비위(금품수수, 성적조작, 성폭력, 신체적폭력)’ 수준의 징계를 받게 하고, 2012년부터 교사 자격증을 받으려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목을 이수³¹⁾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학폭위의 구성 및 학폭사건 처리절차에 있어서 학폭위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그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하여 많은 비판이 있었지만 이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³²⁾

(1) 학폭위 구성의 전문화

동법에서 학폭위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제13조 제1항).³³⁾ 그러나 학폭위의 심의내용을 보면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수립을 위한 학교 체제 구축,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제12조 제2항)으로 매우 전문적인 판단을 요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학폭위의 업무를 고려할 때 그 구성원의 자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1) 학부모대표와 관련하여

학폭위의 과반수 이상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 학부모대표 위원들은 대부분 학교현장과 학교폭력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심의결과에 대해서도 신뢰성이 떨어지게 된다.³⁴⁾ 한편, 동법 시행령 제26조³⁵⁾에서는 학폭위의 위원에 대한 자치위원

EB%7%D1%20%7%D0%B1%B3%C3%F8%0%7%20%B9%CC%BF%C2%0%FB%20%B4%EB%0%0%0%0%7%20%B9%AE%C1%A6%C1%A1).

31) 문화일보, 2012.02.06. 참조.

32) 2015년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자치위원회의 처리 방식 및 위원들의 구성이 편향되어 있고,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되었다(김희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대한 비판적 검토”, 2015, 61-62면 참조).

33)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다(동항 단서).

34) 조인식, “학교폭력 근절 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가해학생 선도 및 조치를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2012. 11.01. 29면; 문영희/강동욱,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상 학교폭력사건 처리절차의 검토와 그 개

회에 대한 제척·기피·회피제도를 마련하여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를 두고 있지만 학부모대표가 이들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들의 자녀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이고, 그들의 자녀의 친구들 및 부모들과의 연계성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인 만큼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거나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학폭위의 심의 결과에 대하여 합리성과 객관성이 담보되도록 학폭위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서 학부모대표의 수를 1/3이하로 줄이고, 학교폭력관련전문가나 청소년전문가 및 법률전문가 등 학교폭력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에 의한 인적 구성이 이루어지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³⁶⁾

2) 경찰관 등 사법기관의 종사자와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에서 학폭위 위원으로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5호)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현직 경찰관을 참여시켜 법률전문적 조언을 받는 것은 필요하다는 점에서 찬성하는 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현직경찰관이 학폭위에 참여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현행법상 학폭사건에 있어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의무적으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범죄수사규칙 제39조)는 점에서 학폭위 참석을 꺼리는 경우도 적지 않

선방안”, 2015. 37면.

35) 제26조(자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자치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와 분쟁을 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사건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의 보호자인 경우 또는 보호자였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자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자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분쟁당사자는 자치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자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으면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④ 자치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을 회피할 수 있다.

36) 학폭위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전문상담교사 및 사회복지사 등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인권보호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위촉하도록 2014년 3월 5일 배재정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표명하고 있다(권오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적용과 문제점”, 『법학논고』 제43권,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98면; 문영희/강동욱, 앞의 논문, 2015, 38면 참조).

다고 한다.³⁷⁾ 따라서 학폭위의 전문성을 갖추면서도 현직경찰관의 업무과중과 참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직 경찰관 대신에 배움터지킴이나 퇴직경찰관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강구할 필요가 있다.³⁸⁾ 다만, 배움터지킴이, 즉 스쿨폴리스에 의한 학생대상 성폭력사건의 발생에 비추어본다면 그 위촉과정에서 자격요건과 그 심사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³⁹⁾

마찬가지로 판사·검사도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참여여부가 용이하지 않아 위원으로 위촉되는 경우도 거의 없으므로 관련규정에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⁴⁰⁾

3) 당해 학교교사 등과 관련하여

학폭위 위원으로 ‘해당 학교의 교감’(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과 ‘해당 학교의 교사 중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교사’(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호)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폭력사건이 발생한 학교 소속의 교사를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당해 교사가 분쟁당사자가 될 소지가 있으며 학교입장을 대변해야 하는 부분도 적지 않다는 현실적인 요청 때문에 학폭위의 결정의 중립성, 객관성 그리고 공정성 부분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교사는 학교현장에서 학생들과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그들과 접촉하면서 생활하기 때문에 학교폭력사건을 잘 파악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학폭위의 올바른 심의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학폭위 위원인 교사가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의 담임교사이거나 사건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제척·기피·회피제도(동법 시행령 제26조)를 통해 학폭위의 당해 사건 심의에서 배제하면 될 것이다.

37) 김형섭,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법제연구—경찰의 대응방안과 헌법정책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164면; 박윤기,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277면 참조; 문영희/강동욱, 2015, 39면 참조).

38) 조병인 외,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법제도적 정비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06, 192면.

39) 다만, 최근 이들에 의해 발생한 성폭력사건에 비추어본다면 그 자격요건과 채용절차의 엄격성이 요구되고 있다(배두열/정귀영, “학교안전을 위한 ‘배움터지킴이’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13권 제1호, 한국민간경비학회, 2014, 77-81면 참조; 문영희/강동욱, 2015, 39면 참조).

40) 문영희/강동욱, 2015, 39면 참조.

한편, 학교의 책임자인 학교장이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⁴¹⁾도 있으나, 학교장은 동법상 자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지위에 있고, 학교장이 참여하게 되면 학폭사건 처리에 있어서 학교장의 입장이 지나치게 반영될 우려가 있으므로⁴²⁾ 현행법의 태도가 적절하다.

그러나 대부분 학교에서 교감을 학폭위의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하고 있는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으므로 동법에서 당해학교 교감이나 교사가 학폭위의 위원으로 위촉은 하되, 위원장은 이들을 제외한 다른 민간위원 중에서 선정하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⁴³⁾

(2) 학폭위 구성의 다양화

동법에서는 학폭사건이 발생한 학교 내에 학폭위를 구성·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제13조, 시행령 제14조 제1항 참조). 그러나 지역적인 특성이나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학교별로 학폭위를 구성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따라서 학폭위의 구성은 개별 학교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사정이나 학교 사정에 따라 학폭위를 공동으로 구성·운영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외에 국가나 교육청 단위로 제3의 전문기관을 설치하여 학폭사건을 심의 및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⁴⁴⁾도 있다. 그러나 학폭위의 구성·운영이 학교폭력사건의 학교 내에서의 신속한 해결을 통한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과 피해학생의 보호에 그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학교 내 사건처리기관으로 학폭위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현재와 같은 체제가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그렇지 않으면 학폭위의 사건 심의에 있어서 당해 학교나 가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특성이나 사정을 고려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 보다는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위주의

41) 신강숙, “행정심판 사례를 통하여 본 학교폭력예방법 고찰”, 「강원법학」, 제41권 제2호,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4. 668-670면 참조; 정한중,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희법학」, 제44권 제1호, 경희대학교 경희법학연구소, 2009. 83면; 문영희/강동욱, 2015.41면 참조).

42) 신강숙, 앞의 논문, 669면 참조; 문영희/강동욱, 앞의 논문, 2015. 41면 참조.

43) 문영희/강동욱, 앞의 논문, 2015. 41면 참조.

44) 시·도 교육청 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견해(김현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개선방안-시론적 고찰-”, 「법교육연구」 제5권 제1호, 한국법교육학회, 2010. 76면) 또는 시·군·구별로 구성하자는 견해(신강숙, 앞의 논문, 671면) 등이 있다. 또한 2013년 12월 10일 서상기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1908484)에서는 학폭위 구성이 어려운 소규모 학교의 경우 지역교육청에 학폭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다(안 제12조). 자세한 것은 문영희/강동욱, 앞의 논문, 2015, 42면 참조.

절차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3) 학폭위의 권한 강화

1) 학폭위의 조사권 강화

동법에서 학폭위를 설치하여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심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학폭 위에게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조사강제권은 부여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동법의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학폭위의 올바른 심의가 전제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학폭위에 학교폭력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설령 학폭위가 사법 기관이 아니고 민간심의기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철저한 조사를 가능하도록 조사대상자들에 대한 학폭위에의 출석요청권 및 질문·조사권을 부여하는 한편, 그 대상자에게도 협조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⁴⁵⁾

2) 학폭위의 결정에 따른 처분 재량권부여

동법에 따르면 심의요청을 받은 학폭위는 학교폭력을 한 가해학생에 대하여 학폭위의 의결(동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참조)을 통해 학교폭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상 가해학생에 대하여 일정한 조치(제17조 제1항)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해서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강화보다는 원만한 해결이 더욱 효과적이다. 그러므로 학폭위에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 재량권을 부여하여 그 심의결과에 따라 동법상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없이 단순히 경고나 주의처분으로 그칠 수 있도록 하거나, 동법상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학폭위의 판단에 따라 가해학생에게 소정의 조치를 부과하거나 분쟁조정절차에 회부할 수 있는 권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학교폭력사건의 정황이나 가해학생의 특성, 피해학생의

45) 학폭위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로서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영국의 경우처럼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가해학생의 학부모에게 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학부모 소환제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이성순 외,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현실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안전학회지』, 2012; 이창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학교전담경찰관의 인식”, 『한국경호경비학회』 제44호, 2015, 122면 참조).

보호, 폭력사건 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절한 처분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가해학생의 학교선도·교육이라고 하는 동법의 입법목적 달성에도 효과적일 것이다.⁴⁶⁾

3) 학폭위의 사전조사권 인정

학교폭력의 경우 그 원인으로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사유도 있지만 대부분은 주변환경적 요소가 원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⁴⁷⁾ 따라서 학폭위가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정확한 심의를 위해서는 학교폭력이 발생하게 된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심의 전에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개인적 특성과 생활환경, 부모나 가족을 비롯한 이웃사람 등 주변인, 교사와 교우관계 및 학교생활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⁴⁸⁾

따라서 학폭위의 결정에 따라 학폭위의 심의대상이 된 사건에 대해서는 전문조사관에 의한 사전조사를 가능하게 하고,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 뿐만 아니라 조사대상자들에게 이 조사에 성실하게 응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⁴⁹⁾ 이때 전문조사관은 상담교

46) 진중익·정상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선 방안연구: 교육과 예방 및 회복 기능을 중심으로”, 「교육법학연구」, 제25권 제1호, 대한교육법학회, 2013; 문영희/강동욱, 앞의 논문, 참조.

47) Loeber, R. & Stouthamer-Loeber, M., “Juvenile aggression at home and at school”, In D. S. Elliott, B. A. Hamberg & K. R. Williams(Eds.), *Violence in American school : A new perspective*,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pp. 94-126; 신복기/이성진, “청소년의 가정폭력, 학교폭력, 우울불안, 자살간의 관계 - 가정위탁, 양육시설, 쉼터, 보호관찰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제44호,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원, 2012, 285면; 한상철, “청소년 폭력의 원인과 대처 방안 : 통합정책의 필요성과 방향”,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 폭력예방 사업평가와 통합정책 추진 모색을 위한 토론회」자료집, 2004, 1-34면 참조; Mayer, G. R., “Preventing antisocial behavior in the schools”, *Journal of applied behavior Analysis*, 28, 1995, pp.467-478; Walker, H., Colvin, G. & Ramsey, E., *Antisocial behavior in school : Strategies and best practices*, Pacific Grove, CA : Brooks/Cole, 1994; ; Gottfredson, G. D. & Gottfredson, D. C., *Victimization in schools*, New York : Plenum, 1985; Lab, S. P. & Clark, R. D., *Discipline, control and school crime : Identifying effective intervention strategies* (Grant No. 93-IJ-CX-0034). Washington DC :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1996(조성호, “학교폭력에 대한 개념화: 통합적 접근 모형”, 「한국심리학회지:사회문제」 제6권 제1호, 한국심리학회, 2000, 54면에서 재인용); 문영희,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대처방안-학교환경의 개선을 중심으로-”, 「법과정책연구」제13집 제2호, 2013, 624-626면 참조.

48) 영국의 경우에는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가해학생의 학부모에게 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학부모 소환제를 통해 그 책임을 공감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성순 외,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현실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안전학회지」, 2012; 이창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학교전담경찰관의 인식”, 「한국경찰경비학회」제44호, 2015, 122면 참조)을 참고하여 학폭위에 학폭위 심의 시에 학부모소환권을 부여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학폭위 심의의 공정성을 담보함과 동시에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권익보호를 위해 심의 시에 학부모나 보조인 등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사나 청소년상담사 또는 의사 등 소년조사 시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로 하여금 조사관으로 선임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하게 하고, 이 조사결과를 학폭위의 심의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된다면 학폭위가 학교폭력사건의 심의와 판단에 있어서 학생들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막고, 피해학생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은 물론, 피해 학생의 보호와 구제에 대한 효과적인 조치를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4) 학폭위 위원의 전문성 강화

학폭위에서 정확한 심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폭위 위원이 학교폭력 및 그 사건처리와 심의결과에 따른 효과 등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개별 학교단위에서 운영되는 학폭위 구성에 있어서 이러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로만 학폭위를 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학폭위의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가급적 학교폭력이나 학교문제에 관하여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노력하되, 그렇지 못한 경우를 고려하여 학폭위의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전문성을 갖추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⁵⁰⁾ 이러한 교육은 교육청 단위로 시행하되, 그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및 학교폭력의 특성에 대한 내용 및 학교폭력 관련법제와 사건처리절차에 관한 내용 등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며, 교육부에서 경찰청 등과 협의하여 학교폭력 관련 교육프로그램과 그 학습자료를 미리 마련해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학폭위 위원들이 학교폭력사건 심의에 있어서 권한을 올바르게 행사

49) 소년법에서는 소년사건의 경우에 소년보호절차에서 소년부로 하여금 조사 또는 심리를 할 때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심리학자·사회사업가·교육자나 그 밖의 전문가의 진단, 소년 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와 의견, 보호관찰소의 조사결과와 의견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제12조), 여야 한다. 제49조의2(검사의 결정 전 조사) ① 검사는 소년 피의사건에 대하여 소년부 송치, 공소제기,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의자의 주거지 또는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 소년분류심사원장 또는 소년원장에게 피의자의 품행, 경력, 생활환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49조의2 제1항).

50) 학교폭력과 관련된 소정의 교육의 이수 등을 법적 요건으로 부가함으로써 학교폭력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물론, 합리적 분쟁조정을 위한 상담 능력이 고양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2014년 3월 5일 배재정 위원은 대표발의한 동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교육감은 자치위원회 위원의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조사·심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시행령이나 지침 등을 통해 규정하고, 관련 매뉴얼을 작성하여 배포할 필요가 있다.⁵¹⁾

(5) 학폭위의 조사와 심의 등에 있어서 구체적인 기한 명시

동법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학교장은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 정기 회의 외에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제3호),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제4호),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제5호)에도 학폭위를 소집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학교장은 학폭위를 소집하여 심의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동법에서는 이때 소집시키는 물론, 심의기한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학교장이 학교폭력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도 즉시 학폭위를 소집하고 있거나 학폭위가 소집된 이후에도 심의를 지연시킴으로써 학교폭력사건의 처리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⁵²⁾

그러나 학교폭력사건의 피해학생 보호는 물론, 학교폭력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학교폭력사건의 신속한 처리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학교장의 사전조사 기간, 학폭위 소집 통보시한, 학폭위 개최시기, 심의기한 등에 대하여 기한을 정하여 법에 명시함으로써 학교폭력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 사건이 신고된 경우 학교장은 이에 대한 사전 조사기간은 1주일 또는 10일 내로 하고, 그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주일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하도록 하고, 학교장이 사전조사 결과보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적어도 24시간 이내) 학폭위 소집을 통보하게 하며, 이 통보 후 1주일 이내에 학폭위를 개최하도록 하되, 심의 기간도 원칙적으로 1개월 내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해 연장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51) 김현철, 앞의 논문, 78면.

52)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된 사건 중에서 학교장 등의 소극적 대처로 인한 것이 126건으로 20%에 해당할 정도 상당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6) 학폭위 심의과정에 있어서 적정절차의 법제화

학폭위의 심의와 결정에 대하여는 가해학생 뿐만 아니라 피해학생의 경우에도 불만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⁵³⁾ 학폭위 진행과정에 대한 주요 불만사항으로는 학폭위의 구성 외에도 편파적 진행(가해사실의 기정사실화 등), 강압적 심문, 방어권보장 미흡(정보제고 미흡 등), 의견지술기회의 부여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헌법 제27조 제4항에 따르면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사건의 피의자·피고인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사건의 가해학생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교폭력사건의 조사나 심의에 있어서도 가해학생에 대한 예단을 가져서는 아니 되며, 학폭위의 심의 시에 있어서 충분한 진술기회를 부여하는 등 이들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적정절차가 유지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해학생은 미성년자이므로 이들의 진술권 등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하여 보조인 제도를 도입하여 부모나 변호사 등을 보조인⁵⁴⁾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학폭위의 심의 시에 이 보조인의 참석을 허용하는 내용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⁵⁵⁾ 이것은 가해학생에 대한 인권보장은 물론 실체적 진실발견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학폭위의 결정에 대하여 가해학생의 불복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익한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피해학생에게도 학폭위에서의 진술기회를 부여하되⁵⁶⁾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하여 보조인 제도⁵⁷⁾ 등을 도입함으로써 사건에 대한 실체를 규명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게 함과 동시에 심의 시에 피해학생의 심리상태 등을 고려한 비공개제도의 도입, 가해학생

53)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된 사건 중에서 학폭위 진행과정에 대한 것은 50건으로 8%를 차지하고 있다.

54) 보조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변호사, 가해학생의 법정대리인·직계친족·형제자매, 상담소등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 등으로 하면 될 것이다.

55) 「소년법」 제17조 제1항에서 소년보호사건에서 “본인이나 보호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참고할 수 있다. 다만, 학폭위의 심의절차는 국가기관에 의한 사법절차는 아니므로 국선보조인제도나 국선변호인제도를 도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56) 「소년법」 제25조의2에서 “소년부 판사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변호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의견진술을 신청할 때에는 피해자나 그 대리인등에게 심리 기일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참고로 할 수 있을 것이다.

57) 「아동복지법」 제21조에서 법원의 심리나 수사기관의 조사에 있어서 피해아동이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을 참고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피해학생의 보조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변호사, 피해학생의 법정대리인·직계친족·형제자매, 상담소등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 등으로 하면 될 것이다.

과의 대면금지, 피해학생의 신중한 처우 등 피해학생이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심의 절차에 있어서 여러 가지 특례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⁵⁸⁾

특히 학폭위 위원들이 사법기관이 아니고, 민간인으로서 이러한 절차에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아서 가해학생들이나 피해학생들의 권익보호나 피해방지 등에 대해 특별한 지식이나 관심을 갖고 있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므로 이러한 내용을 법이나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이를 명심하도록 함과 동시에 앞에서 제시한 학폭위 위원에 대한 교육에 있어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시킴으로써 충분히 숙지하게 할 필요가 있다.

III. 맺음말

동법의 입법목적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과 더불어 학교폭력의 예방을 통한 피해학생의 보호와 피해의 최소화에 중점이 있다. 그러려면 학교가 학교폭력의 근절과 해결을 위한 기관으로서 그 중심에 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폭력사건의 처리절차에 있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학생폭력전담기구나 학폭위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그 권한을 강화하고, 학폭위의 조치나 분쟁조정 결과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사법적 효력을 인정하여 학교 내 처리절차가 최종적인 처분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다만, 학폭위에 이러한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학폭위 위원들이 학교 또는 학생의 특성에 대한 이해와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법제와 처리절차 등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다른 한편, 학교폭력의 조기 차단과 학교폭력사건의 신속한 해결과 피해학생의 신속한 구제와 보호를 위해서는 교장과 교사 등 학교관계자의 신고의무를 강화하여 학생폭력에 대한 조기해결이 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강구할 것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들이 학생들과의 상담을 일상화하는 등, 학생과의 소통을 활성화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노력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한다.⁵⁹⁾ 나아가 학

5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조사·심리에 있어서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나 법원의 심리에 있어서 심리의 비공개제도, 보조인제도 등을 도입하고 있는 것을 참고로 할 수 있을 것이다(제17조). 그러나 학폭위의 심의절차는 국가기관에 의한 사법절차는 아니므로 국선보조인제도나 국선변호사제도를 도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교에 있어서 교권을 보장하는 한편, 교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과 제도가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학교폭력사건의 발견과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의 상담·치료를 위해서는 학교 내 전문상담교사의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모든 학교가 전문상담교사를 둘 수 있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이외에도 학교폭력 사건의 처리에 의한 학폭위의 심의나 학교장의 조치로 인해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에 대해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⁶⁰⁾, 동법상 조치를 통해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이나 피해학생의 보호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치를 받는 당사자의 이해와 승복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법 상 조치에 대한 불복절차를 통일화하고, 그 절차에 대한 안내 등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 내 처리절차를 강화하게 되면 학교 내 학교폭력 사건 처리기관인 학폭위가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할 수 있게 되는 한편, 이를 통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등, 학교폭력 사건의 이해당사자들이 가급적 학교 내에서 사건을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이므로 동법의 입법목적을 충실하게 달성하는 데에도 유효할 것이다.

모두가 합의하고 수용할 수 있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법을 만드는 일은 학교폭력 유형의 다양성과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관계, 가해학생의 환경 등,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을 고려할 때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학교폭력은 사건 당사자나 학교 내부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학생을 둘러싸고 있는 가정환경, 지역사회 등의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발생하는 것이므로 어느 한 부분에 대한 정책이나 규제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방식도 가해학생의 처벌이나 교사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따라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최소기준으로서 관련 법령도 형사법적 접근 보다는 교육적 접근이 중요하다. 그렇다고 하면 학폭위의 구성 및 운영도 이러한 목적에 충실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적극적인 개선·운영이 요구된다.

59) 학교폭력 예방·대응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정책에 있어서는 청소년의 특성과 학교폭력의 비행 유발 양태에 맞게 개별화하고 전문화시키는 과정 및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60) 학교폭력의 대책에 있어서는 학생 개인이 느끼는 억울함, 혹은 분노감정, 그리고 우울감 등과 관련된 문제에 개별적인 접근을 통해 개인역량을 키워주고 또한 가정 및 학교환경 전반 및 정책과 제도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개선이 요구된다(이경상/이순래,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VII : 생활긴장과 청소년 비행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패널조사 데이터분석보고서 1』, Vol 2009, No.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9, 45-50면 참조).

학교폭력 처리과정에서의 분쟁 완화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지정토론

교육위원)

정민재 사무관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전수민 변호사 (서울시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탁경국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지원단)

박숙영 센터장 (좋은교사운동 회복적 생활교육센터)
현미미 상담실장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이유미 단장 (푸른나무 청예단, 학교폭력 SOS)

<p>토 론 문</p>	
--------------	---

■ 정민재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사무관)

‘학교폭력사건 처리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의견



■ 전수민 (서울시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변호사)

토 론 문



■ 탁경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교육위원 변호사)

1. 머리말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 관하여 당사자들(가해학생, 피해학생)의 인권의 관점에서 성찰해보는 기회를 가지는 것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인권위가 학교폭력 관련 진정 건수에 관한 유형별 분석을 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고, 이를 현행 제도 개선과 접목시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본 토론회를 개최한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6년간 학폭 진정 건수 421건 중 학교장의 소극적 대처에 불만을 품은 진정 건수가 126건인 반면 과잉대응에 불만을 품은 진정 건수가 14건에 불과하다는 통계는 여전히 학교에 피해학생의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생긴 문제는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므로 두 가지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도를 설계할 때는 당사자들의 인권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여야 하지만, 이들 대립하는 양 당사자들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며 이들을 교육적인 방식으로 지도해야 하는 교사들의 고충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2발제문에서 포착할 수 있는 문제의식이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투 중인 교사들의 고충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이며, 이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2. 제2발제문에 대한 토론

가. 총론

발제자께서는 기본적으로 “동법이 원칙적으로 학교폭력사건 처리를 위한 기본법으로서 기능하게 하고, 따라서 동법에 의한 조치가 결정되고, 이것이 그대로 행하여질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학교폭력사건이 종료되고, 이후에 다시 사법적 처리를 할 수 없는 법적 효과를 부여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전제 하에, 구체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현행법 규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이 전제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학교폭력 중에는 형사범죄에 이르지 않는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행위와 형사범죄에 해당하는 심각한 행위가 있는데, 이 중 형사범죄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피해 당사자가 형사처벌을 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적 처리가 되는 것이 타당하고, 이에 대해서는 소년법과 형법을 비롯한 형사법이 규율하고 있습니다. 사법적 처리가 되었거나 될 예정인 행위에 대해서 사법적 처리와 별도로 학교에서의 징계조치가 필요한지에 관하여는 논의가 필요하지만(학교폭력예방법 제5조1)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무는 사법적 처리와 별도로 학교에서의 징계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 사법적 처리가 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의 징계조치가 필요하다는 데에 거의 의견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즉, 그다지 심각하지 않은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에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 어떠한 징계조치를 취하고 어떠한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가 현재 학교폭력예방법 개정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논쟁의 중심 내용인 것입니다.

이처럼 그다지 심각하지 않은 학교폭력을 정확히 처리해야 하는 유일한 기구가 자치위원회이므로 자치위원회의 구성이 전문가 위주로 개선되고, 자치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되는 것은 무척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조건을 감안하여 점진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
- 1)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학교폭력의 규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 ② 제2조 제1호 중 성폭력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각론

(1)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와 관련하여 ①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의 주체가 학교장이라는 점을 주목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재량권의 확대, ② 서면사과는 가해학생의 반성을 이끌어 내기 위한 유용한 처분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서면사과가 반복해서 이용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민·형사 절차에서의 증거 활용 금지에 대한 법적 보완, ③ 교육감이 정한 특별교육기간과 치료기간의 수업일수 산입, ④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징계는 어디까지나 선도·교육에 목적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형사제재와 동일한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사회봉사’는 ‘봉사활동’으로 용어의 재정립, 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처분에 있어서 학교장의 자의적인 처분을 방지하기 위해 출석정지기간에 대한 세부기준의 제시, 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피해학생의 유책성에 대한 사유의 명시 의무화, ⑦ 장애학생 보호를 위한 가중 처벌에 있어서 획일적 기준이 아닌 피해사례별 조치기준의 마련, ⑧ 학생부 기재사항 보존기간의 최소화 및 기재사실 누출 금지 등을 제안하셨습니다.

제안하신 사항 모두 긍정적으로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이 중 ②와 ⑥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지 상이 잡히지 않아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⑧과 관련해서는, 학생부 기재가 상급학교 진학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중학교의 경우에는 3학년 2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삭제를 하자는 주장이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와 관련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구제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폭력행위로 인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폭력행위의 성질이나 정도에 따라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있을 수 있는 행위라면 동법의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피해학생에 대하여 보호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객관적으로 피해를 수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가 있으면 폭력을 당한 학생이 그 피해를 부정하지 않는 한 피해발

생을 인정하는 것으로 입법화하여 동법의 적용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싶습니다. 후술하듯이 현재 학교폭력의 개념은 충분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현재의 법의 태도로 인하여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는지 실증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해학생의 형사처벌과는 관계없이 학교폭력의 피해학생도 일반범죄 피해자에 준하는 규정을 두어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게 함으로써 법적 구제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거나 피해학생이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보호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따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니면 「범죄피해자 보호법」을 개정하여 그 적용대상에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포함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는 제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실증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생의 교사에 대한 폭력도 학교폭력의 범주에 포함시켜 신체적 정신적 치료에 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은 2016. 8.부터 시행중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²⁾의 보호조치로 수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3) 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제안하신 내용들은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갈 사항들이라고 보여집니다.

2) 제15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①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폭행, 모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이하 "교육활동 침해행위"라 한다)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3. 토론자가 생각하는 학교폭력예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가. 광범위한 개념+의무적 조치로 인한 자치위원회 업무의 과중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 사이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다툼 마저도 학교 폭력으로 포섭되고, 일단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주장이 있으면 자치위원회가 무조건 학교 폭력 해당 여부를 판단한 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 구조 하에서 교사들이 교육적 관점에서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는 없게 됩니다. 그리고 자치위원회는 업무의 과중으로 인한 몸살을 앓을 수 밖에 없으며, 특히 단위 학교에서의 자치위원회 위원 과반수가 학부모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체제 하에서 분쟁 당사자들이 기피 신청을 활용하게 되면 자치위원회가 앓는 몸살의 정도는 더 심해질 것입니다.

나. 학생생활기록부 기재로 인한 변칙적 합의 및 소송의 급증

학생생활기록부 기재로 인한 학교폭력 예방 효과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로 인한 부작용 또한 심각합니다. 학생생활기록부 기재로 인한 학교폭력 예방 효과는 주로 그 기재 내용이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데서 기인하는데,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학생, 학부모들의 소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일순간의 사소한 실수가 상급학교 진학에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받아들일 수 없는 학생, 학부모로서는 학생생활기록부 기재를 사전에 막기 위하여 거액의 합의를 시도하기도 하고, 일단 기재가 된 후에는 기재 내용을 삭제시키기 위하여 사활을 걸고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강행합니다. 학교는 이에 대응하는 수고를 또 다시 해야합니다.

정작 학생들 스스로는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소한 언어폭력 등을 오히려 학부모들이 개입하여 감정적으로 대립하면서 학교폭력 사안으로 몰고 가서 소송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빌미를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이 제공하고 있다는 점은 반드시 지적되어야 합니다.

다. 재심기관의 이원화로 인한 문제점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가해학생만이 재심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학생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양 재심을 담당하는 기관이 다릅니다. 이로 인하여 양 재심기관의 결정의 모순·저촉이 발생하고 분쟁이 무한히 악순환할 수 있습니다.

라. 법 제18조의 기능 약화

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자치위원회가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을 교육적 관점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위원회가 분쟁을 조정하더라도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조치는 반드시 행하여져야 하고, 이는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되기 때문에 가해학생 입장에서는 자치위원회를 통한 조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지 못합니다. 조정이 가능할 정도의 사안이라면 담임교사의 조정으로 종결되며 자치위원회 소집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담임교사의 주선 하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안이 자치위원회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합의가 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법 제18조는 그 기능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마. 개선 방향

학생들의 일상 생활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힘의 우위를 동반하지 않는 다툼에 대하여는 담임교사 선에서 원만히 화해시키고, 담임교사가 처리 결과를 학교장 또는 자치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담임교사 선에서 원만히 화해시키기 어렵거나 부적절한 사안들의 경우에도 교육적 중재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중재 친화적인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모든 사안을 자치위원회로 끌고 간 다음 원만한 합의가 된 사안에 대해서도 무조건 가해학생에 대하여 선도조치를 결정할 것을 강제하는 현행법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4. 마치며

대한상공회의소는 우리 사회가 신뢰의 자본을 복유립 수준만 쌓아도 4%대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2016. 10. 27.자 한겨레). 사회적 자본을 높일 경우 「신뢰자본 확충→규제감소→기업가정신 고취→투자 증가→경제성장」의 선순환을 이루는 신성장경로를 확보할 수 있어 현재의 2%대 후반 성장률이 4%대로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학교폭력 처리에 대입하여 보면, 「학교에 대한 신뢰자본 확충→학교에 재량권 부여→교육자 정신 고취→교육적 해결」의 선순환을 이루는 경로를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가 신뢰자본을 쌓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적 대처, 어떻게 가능한가?



▣ 박숙영 (좋은교사운동 회복적 생활교육센터 센터장)

1. 발제문을 읽고

- 현행 학폭법에 대한 문제의식과 대안

1) 현행 학폭법 문제의 근원적 이유와 대안

현 학폭법은 ‘피해자 보호, 가해자 선도, 가피해자 분쟁조정을 통한 인권보호’를 목적으로 하여 소년법이나 일반 형사법과는 다른 사건처리절차를 마련하고자 한 보충적 법률로 제정되다 보니 법적 효과가 낮다고 분석했다. 현 학폭법 문제의 근원적 이유는 동법을 제정하게 된 입법연혁의 특수성으로 인한 혼란과 그 규범내용에 대한 정확한 정립과 인식이 결여된 채 입법한 것에 이유가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법은 현 학폭법을 학교폭력사건 처리를 위한 기본법으로 기능하게 하여 법적 효과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2) 학폭사건의 기본법으로 기능하게 하기 위한 유의점과 제안들

[가해학생에 대해]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있어서 형사법적 접근보다는 교육적 접근을 우선시

[피해학생에 대해]

-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일반범죄 피해자에 준하는 규정을 두어 「범죄피해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게 하여 법적 구제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

[학폭위 구성과 운영에 대해]

- ① 학폭위 구성의 전문화
 - 학폭위 구성의 전문화를 위해 학부모대표의 수를 1/3로 줄이고 대신해서 학교폭력전문가나 청소년전문가, 법률 전문가 등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로 인적 구성
 - 현직 경찰관 대신에 배움터 지킴이 또는 퇴직 경찰관 위촉, 현실적 참여가 어려운 판사·검사 위촉은 삭제
 - 교사위원은 교감과 교사는 학폭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되 위원장은 민간위원이 담당.
- ② 학폭위 구성의 다양화
 - : 학교별 구성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나 교육청 단위로 제3의 전문기관을 설치 제안
- ③ 학폭위 권한 강화
 - : 학폭위 조사권 강화, 학폭위 결정에 따른 처분 재량권 부여, 학폭위의 사전 조사권 인정. 전문조사관에 의한 사전조사.
- ④ 학폭위 위원이 전문성 강화
 - : 소정의 교육이수 제도화, 교육내용은 가피해학생의 특성과 학폭의 특성, 그리고 학폭 법제와 사건처리절차
- ⑤ 학폭위의 조사와 심의 등에 구체적 기한 명시
- ⑥ 학폭위 심의과정에서 적정절차의 법제화
 - : 무죄추정의 원칙 적용, 당사자들에게 진술 기회 부여로 방어권 보장, 보조인 제도, 비공개제도 도입, 당사자들의 대면 금지, 피해학생의 피해방지를 위한 특례 마련.

발제문을 요약하고 정리해보면, 학교폭력법이 교육적 대처가 되도록 가해학생에겐 처벌보다 교육적 대처, 피해학생에겐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적용하여 법적 구제 대상으로 확대, 학폭위의 전문성을 위해서 학부모와 교사의 영향력을 축소시키고 학폭 전문가들이 담당하도록 했다. 그리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가 되도록 법률 제정을 제안했다. 큰 틀에서는 처벌보다 교육적 대처의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학폭절차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 내용이 없어서 막연하고 원론적으로 비취진다.

가장 눈에 띄는 대안의 핵심은 학폭법의 법률 구속력을 강화하고, 그 운영에 있어서는

학교폭력 전문가의 역할이 크다는 것이다.

현재 학폭법에서의 학교폭력전담기구의 구성원은 교감, 학폭위담당교사, 상담교사, 보건 교사로 모두 학교 교사들이다. 그러나 발제문에 의하면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전문 조사관에 의해 사전조사가 이루어지고, 학폭위에서는 학교폭력전문가의 참여를 확대시켰다.

전문조사관이나 학폭전문가 중심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학폭법이 진행된다면, 그동안 학폭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의 문제를 완화하고 교사들의 업무경감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교육적 대처에 대한 구체적 대안 제시는 더욱 필요한 것 같다.

2. 학교폭력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교육적인 접근을 위해

1) 현 학폭법 문제의 근원적 이유와 대안

- 피해와 관계회복을 보장하지 못한 채, 처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학폭법이 문제다. 현 학폭법의 취지와 목적을 위해 기존의 소년법과 일반 형사법과 별도로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과 절차는 소년법과 일반 형사법의 형사처벌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 현행 학폭법의 교육적 의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형사사법적 방식과 구별되는 조정법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형사처벌 방식의 한계로 조정법적 성격인 회복적 프로그램 적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그 적용 사례들도 늘어나고 있다.

현 학폭법 문제의 근원적 이유는, 피해와 관계회복 상관없이 형사법적 절차에 의한 처벌 중심의 학폭법이 문제다. 현행 학폭법의 대안으로 회복적 과정을 제안한다.

2) 교육적 대처를 위한 유의점

(1) 학폭법은 소년법과 일반 형사법과 구분하여 조정법적 성격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학교폭력의 원인은 처벌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학교폭력을 유발하는 요인들은 다양하고 너무나 복잡하다. 복잡하고 다양한 유발 요인들이 투명하게 드러나서 다루어지고 해소되지 않는다면, 학교폭력은 반복될 수 밖에 없다. 복잡하고 다양한 학교폭력을 다루기 위해서는 피해 당사자들과 공동체가 함께 해법을 탐색하고 함께 책임지는

회복적 프로그램이 효과적이다.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형사처벌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회복적 사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UN에서는 청소년범죄만큼은 회복적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2) 범죄의 관점에서 갈등의 관점으로 전환이 필요.

학생간의 발생하는 폭력을 범죄의 관점에서 갈등의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 보다 다양한 교육적 접근이 가능해진다. 사소한 갈등이 폭력과 범죄로 발전하기도 하지만, 갈등은 인간 사회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갈등은 변화의 동력이 되어 배움과 성장의 기회가 된다. 학생들 간에 발생하는 갈등과 폭력을 교육적 기회로 삼을 수 있을 때 또 다른 폭력과 더 심각한 폭력을 예방할 수 있다.

(3) 처벌 중심에서 피해회복과 관계회복을 중심으로.

현행 학폭법 절차에 따르면, 학교폭력 당사자 간의 관계회복과 상관없이 가해학생이 처벌을 받게 되면 학교폭력 사안이 종료된다. 관계회복과 별개로 종료되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안전은 보장받지 못한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관계를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발생한 피해 회복과 당사자 간의 관계 회복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토론 발제문에서 문영희 교수는 가해학생의 반성을 이끌어 내기 위해 ‘서면사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는데, 서면사과는 관계회복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한다. 현 학폭법에서는 서면사과가 처벌의 한 방식으로 행정적 절차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 피해자의 2차 피해의 위험이 있다.

(4) 공동체의 참여와 참여자들의 회복적 과정에 대한 이해와 역량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노력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가해학생이 자기반성을 하더라도 공동체구성원이 가해학생에 대한 편견과 꼬리표를 단다면 가해학생의 선도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피해학생의 회복을 위해서도 공동체 구성원의 돌봄과 지지가 없다면 불가능하다. 학교폭력의 책임은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공동

체에게도 해당된다. 그러므로 학교폭력 해결을 위해 개인과 공동체가 해결과정에 함께 참여하고 책임져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문영희 교수가 학폭위 구성의 전문화를 위해 학교폭력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는 제안은 학교폭력문제에 지역 공동체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어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학교폭력 전문가가 회복적 과정에 대한 이해와 역량을 갖추는 것이라고 본다.

(5) 학교는 경찰력이나 사법적 질서에 의존하면 교육적 기능이 약화된다.

학교는 교육기관이다. 교육기관은 진리의 실험장이며 실천의 장이다. 학교폭력이라는 불행한 사건에 대해서 학교는 형사사법적 대처가 아닌 교육적 대처가 우선이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학교는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적 실험이나 실천을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

현 학폭법의 대책이 형사법적 절차 중심과 학교전담경찰력에 의존하게 되면 다른 한편에서는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러므로 학교는 형사법적 질서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 가치인 민주주의와 정의에 의한 질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쏟아야 한다.

(6)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적 대처, 회복적 정의(사법) 프로세스

교육적 대처를 위해 징벌적이고 처벌 중심의 대응이 아닌, 피해회복과 관계회복, 공동체 참여방식인 회복적 정의 프로세스를 제안한다. 회복적 과정은 이미 UN에서도 늘어나는 청소년범죄에 대해 형사적 접근이 아닌 회복적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적용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회복적 과정을 위한 실험이 소년법 차원에서도 시도되고 있는데, 그보다 경미한 사안에 해당되는 학교 안에서의 폭력문제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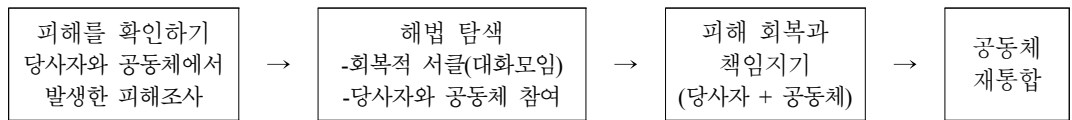
처벌중심의 응보적 대처와 사고방식이 강한 까닭에 회복적 과정이 과연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우려하고 의심하는 목소리가 많다는 것을 인정한다.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은 용기와 도전이 필요하다. 우려와 의심으로 인해 회복적 과정에 대한 가능성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미 한국에서도 교사중심의 자발적 교육운동으로 회복적 실천이 진행되고 있으며, 소기의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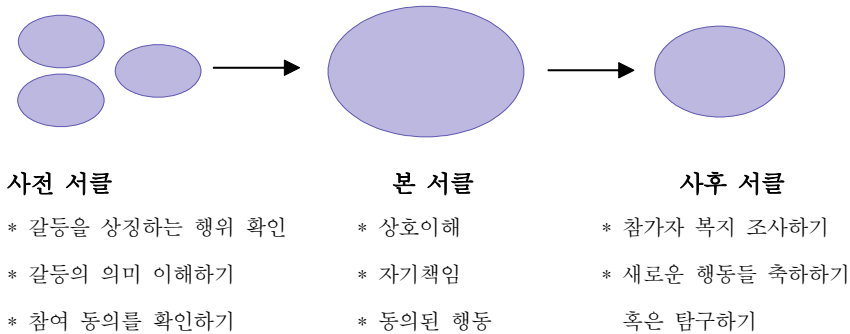
다만 현실적으로 현 학교폭력법은 회복적 과정 도입 자체를 어렵게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회복적 실천을 선택하는 교사들로 하여금 더 많은 헌신과 부담을 갖게 한다. 회복적 과정 도입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 개정과 회복적 과정에 대한 이해와 역량을 갖춘 인적자원을 마련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학교폭력의 교육적 대응을 위한 회복적 과정과 그 효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참고자료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회복적 과정 소개]



[회복적 서클의 과정]



[회복적 서클 효과성 설문조사]

회복적 서클(대화모임)이 과연 학교폭력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이 가능할까? 형사처벌방식이 아닌, 대화로 진정성있는 사과와 화해를 가능하게 할까? 오히려 학교폭력을 은폐·축소하고, 가해자의 편에 서서 가해자에

게 면죄부를 주게 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회복적 서클(대화모임)은 학교폭력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기대를 모으기도 했지만, 반면에 학교폭력을 은폐하고 가해자의 면죄부가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회복적 서클(대화모임)의 교육 실험은 2011년에 공식적으로 시작되었고, 그 이후 여기저기에서 6년째 시도되고 있다. 갈등에 대한 새로운 도전인, 회복적 서클(대화모임)은 여전히 적은 수의 회복적 실천가들을 통해 실천되고 있는데 짧지만 그동안의 교육 실험을 성찰해보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회복적 대화모임의 효과성 설문조사 결과

1. 조사목적 : 회복적 대화모임의 효과와 만족도 검사

조사 방법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
대상	회복적 대화모임 진행 경험 교사 및 회복적 대화모임 참여 학생
참여 인원	교사 129명, 학생 70명(피해:29명, 가해 41명)
조사 기간	2016년 6월22~6월28일 (7일)
조사 기관	(사)좋은교사, 회복적생활교육센터

2. 조사 내용

학교급, 회복적 대화모임 이후의 심리적 안정 상태, 자기 성찰 및 관계 개선 정도, 회복적 대화 모임의 다시 선택 여부, 효과성과 부작용, 어려운 점.

3. 응답자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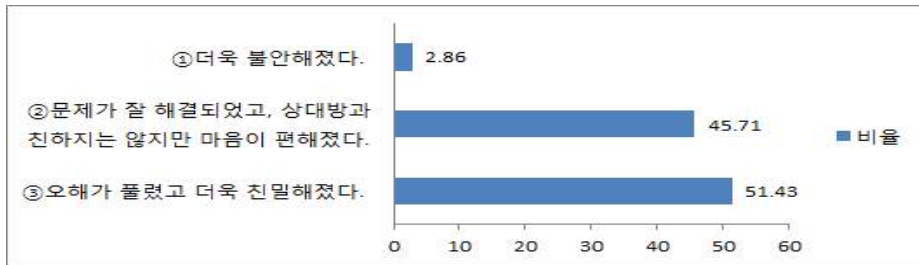
		교사	학생	사례 수(명)
전체		129	70	199
학교급	초등학교	79	37	116
	중학교	56	32	88
	고등학교	14	1	15

4. 결과

가. 학생답변

(1) 회복적대화모임 이후 심리적 안정 상태

- ‘오해가 풀리고 친밀감향상’ 51.4%, ‘친해지지는 않았지만 마음이 편해졌다’ 45.7%로 총 97%로 심리적으로 안정되었음을 나타내었다. ‘더 불안해졌다’는 2.86%로 낮게 나타났다.



(2) 회복적 대화모임 이후에 자기성찰 및 관계 개선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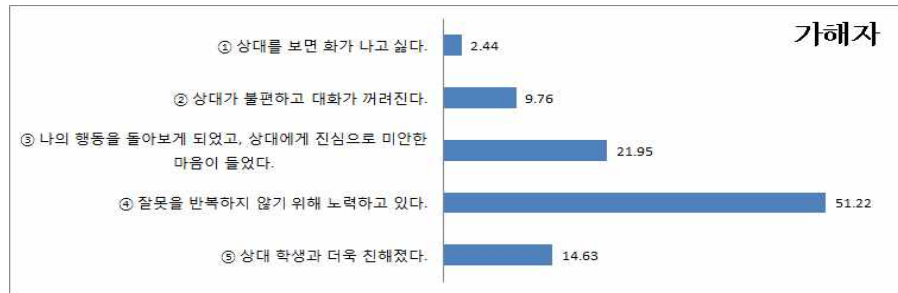
[피해 입장]

상대방과의 관계가 동등할 뿐 아니라 더욱 친해졌다.’는 의견이 48.28%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상대와의 관계가 동등해졌고 대화하는 것이 불편하지 않다’는 의견이 24.14%로 긍정적 관계성 향상이 72.42%로 나타났다. 반면 ‘불안하다’는 의견은 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가해 입장]

가해학생의 경우에, 회복적대화모임이 자기성찰과 잘못의 재발방지, 친밀감형성에 87.8% 답변으로 큰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 회복적 대화모임을 다시 선택하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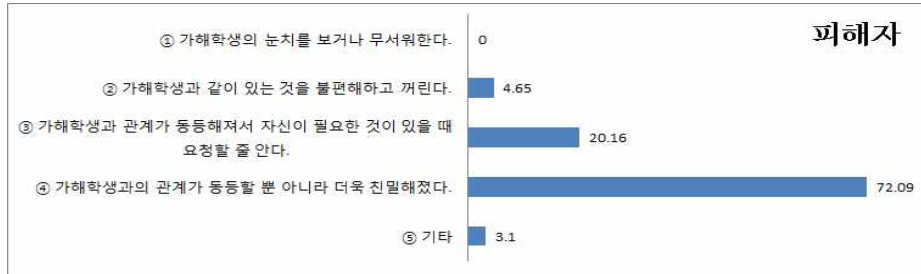
피해의 경우, 96.55%로, 가해의 경우 95.12%로 회복적 대화모임을 다시 선택하겠다고 답변했다. 회복적대화모임을 다시 선택하겠다는 것은 대화모임에 대한 효과와 신뢰에 대한 체감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대화모임에 대한 만족 체감도가 95.71%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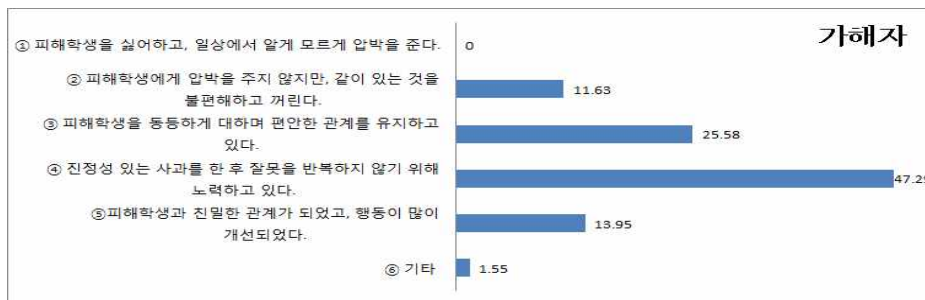
나. 교사 답변

(1) 회복적 대화모임 이후의 학생들의 심리적 안전 상태와 자기성찰 정도

피해학생의 경우, '가해학생과 관계가 동등할 뿐 아니라 더욱 친밀해졌다'는 의견이 72.09%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가해학생의 눈치를 보거나 무서워한다'는 의견은 0%로 낮게 나타났다. 교사가 관찰하기에 피해학생의 심리적 안전에 대한 긍정적 효과가 92.25%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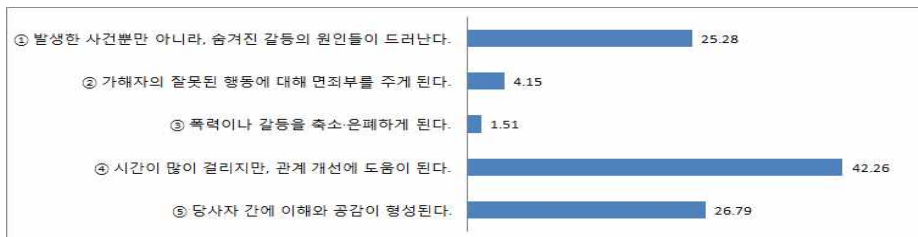


가해학생의 경우, ‘진정성있는 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실천’(47.29%), ‘동등하고 편안한 관계유지’(25.58%), ‘피해학생과 친밀감 향상과 행동의 개선’(13.95%)로 가해학생의 선도효과에 대해 86.82%의 긍정적 답변을 했다.




(2) 회복적 과정에 대한 효과와 부작용

효과로는 ‘관계개선’(42.26%), ‘당사자 간의 이해와 공감 형성’(26.79%)로 68%가 긍정적 효과에 대해 답을 했으며, ‘숨겨진 갈등이 드러난다’(25.28%),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게 된다’(4.15%)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 의하면 관계개선에 도움을 주지만, 갈등을 은폐하거나 면죄부를 주지 않게 된다는 답변이다.



결론

학교폭력을 유발·유지시키는 것은 불균형한 관계구조에 있기 때문에, 동등한 관계구조로의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회복적대화모임 이후의 관계개선이 72.42%이며, 그중에 오히려 ‘친밀해졌다’는 관계의 발전이 48.28%로 높게 나타난다(피해 학생의 입장). 가해입장의 학생 경우도 친밀감 형성과 자기성찰이 87.8%로 높은 선도의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대화모임에 대한 만족 체감도가 95.71%로 현행 학폭법에 의한 만족도가 36%에 불과한 것과 비교해 보아도 현격히 높은 수치다. 짧은 지면이라 실지 못했지만, 학교에 적용할 수 있기 위해 정책적 과제들이 여전히 산재해 있다.

<p style="text-align: center;">학교 구성원간의 관계 회복과 교육적 해결을 위한 학교폭력법 개정이 필요하다.</p>	
---	---

■ 현미미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상담실장)

학교폭력 상담자체는 줄었지만 학교폭력해결과정상의 문제점은 늘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의 학부모상담실에서 상담한 학교폭력 상담건수는 최근 2년간 2014년 13.8%, 2015년 12.1% 으로 전체 상담유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지는 추세이다. 최근 4년여 동안 학교폭력 상담 사례건수가 조금씩 적어지고 있는 이유는, 요즘 학교에서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하자마자 바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지속적인 홍보로 117등 바로 접수가 가능한 직통연결전화가 생기고, 이를 알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가 늘었던 것도 이유 중의 하나일 것이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실제적인 해결과정이 바로 이어지는 신고센터전화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볼 때 우리 회에 들어오는 학교폭력상담사례들이 의미하는 바가 따로 있다. 우리회의 최근 사례들을 살펴보면 학교폭력피해자체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기 보다는,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학교에서 사건처리에 집중하다보니, 이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인권 침해적 요소와 부당함, 받아들이기 힘든 징계, 생활기록부 기재로 인한 심리적 부담과 불안,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것에 대한 억울함 등을 겪게 되고, 이를 우리 회를 통해 가능한 해결책을 찾고자 하였다.

특히 가해학생의 학부모상담사례가 눈에 띄게 높아졌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회의 결과에 대해 불만이 많고, 적절한 해결책이 제시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특히 자녀들이 학교라는 사회에서 배척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컸다. 또한 자녀의 생활기록부에 부정적으로 기록되는 것에 대한 불안이 커,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기 보다는 잘못이 없다

는 것을 증명하고자 노력하고,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축소시키기는 쪽에 무게를 두게 된다. 피해자에게 중요한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는 어려운 방향으로 전개되는 경향을 보였다.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는 학교폭력 해결의 교육적 대안이 될 수 없다.

교육부는 2011년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으로 학교 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2012년 2월, 가해 사실을 생기부에 기록·보존하도록 하는 지침을 포함한 학교폭력종합 대책을 내놨다. 민변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며 “지침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청구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생기부가 상급 학교 입시에 결정적 변수로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해 학생이 입는 피해가 과도하다는 것이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라는 낙인을 받은 학생은 학년이 바뀌고 학교가 바뀌어도 그 꼬리표를 달고 다니게 됨으로써 교사는 해당 학생을 선입견과 편견으로 지도할 소지가 다분하다. 그리고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고 새 출발의 기회를 주지 않는 이 같은 조치는 전혀 교육적이지 않고 성장하는 학생의 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은 너무나 가혹한 조치이다. 경각심을 고취시켜 학교폭력을 예방한다고 했지만, 일부 계층에서는 학교폭력 브로커가 등장하고 학교폭력위원회에 변호사를 대동하고 참석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생기부 기재의 부작용은 심각한 실정이다.

학교폭력 해결의 가장 큰 목표는 피해 학생의 회복과 가해 학생의 반성과 진심 어린 사과, 그리고 재발 방지여야 한다. 그러나 생기부 기재는 그 결과가 너무 가혹하다 보니 가해 학생에게 반성할 기회를 주기보다는 자신의 가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행동—가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반성과 사과보다는 브로커를 통해 무리한 합의를 종용하는 등—으로 변질되곤 한다. 피해 학생 입장에서든 가해 학생에 대한 정당한 처분을 요구하는 것이 마치 가해 학생의 신세를 망치는 일처럼 여겨져 부담스러워 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생기부 기재 사실을 지우기 위한 행정심판청구 건수도 크게 늘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에 접수된 학폭위 처분 관련 행정심판 청구 건수는 2012년 38건에서 2015년 63건으로 3년 사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소년법에서도 소년범의 장래를 위해 범죄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는데, 학교폭력의 경우에 경미한 사안까지 기록에 남기는 것은 형평

에 맞지 않는 지나치게 가혹한 조치이다. 따라서 학생생활기록부 기재는 금지되어야 한다.

학부모들이 여전히 억울하지만 해결을 해주는 곳은 없다.

우리 회에 상담사례 중 학교폭력사례를 상담하는 학부모들의 심리적 특성은 매우 억울함과 분노를 호소한다는 것이다. 피해학부모들은 아이들이 겪었을 고통을 가해학생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거라고 이야기 하고 가해학부모들은 할 말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는데 하소연 할 수 있는 마땅한 곳이 없다고 한다. 대부분의 학생과 학부모들은 자신들이 받았던 영향들에 대해, 상대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속적으로 호소를 한다. 서로가 안전하게 자신들이 겪은 피해와 영향과 마음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들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과 시간이 마련되지 않기 때문이다. 서로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학교장, 교육청, 인권위, 변호사, 교육부등에 민원을 내고, 소송 등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다. 하지만, 그동안 아이들은 심리적·사회적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경우 후유증으로 인해 심지어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도 생긴다.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할 아이들이 중심이 아니라 처벌적 징계 위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모두가 원하는 것은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방지를 통한 관계회복이다.

학부모들이 우리회의 상담실을 통해 합리적이고 뚜렷한 해결책을 찾기 원하지만, 사실 학교폭력해결의 열쇠는 학생 당사자들에게 있고 해결되었다는 것은 학생당사자가 안전하고 즐겁게 학교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중에서 가장 밑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피해당사자의 고통을 가해당사자가 알고, 이에 따른 진심어린 사과를 하는 것이다. 교사, 학교, 학부모, 교육청, 교육부 모두가, 당사자학생들 스스로 진심어린 사과와 용서를 통해 이러한 회복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와주는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가해한 학생들에게 처벌과 징계를 통한 선도는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경기도를 주축으로 하여 회복적 생활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은 다행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회복적 생활교육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려면 교육적 가치를 토대로 한

학교폭력대책법이 재정비 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학폭법에서 학폭위의 구성과 기능은 보다 전문화되고 강화 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교 내 학교폭력자치위원회는 본래의 교육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처벌위주의 활동을 지양하고 학교폭력의 예방적 활동과 학교 내 갈등 상황을 중재, 조정 할 수 있는 기능을 의무사항으로 강화해야 한다. 또한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 재량권을 부여하여 학폭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단순 경고나 주의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게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폭력위원의 구성을 보다 전문화하고 다양화해야 한다. 학교폭력전체위원의 과반수를 전문 상담교사 및 사회복지사 등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인권보호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또한 학부모 대표가 학폭 위원인 경우 일정한 연수와 학폭 위원 양성과정을 이수하여 전문적인 학폭 위원으로 자격을 갖추었을 때 학폭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가령 교육청에서 학교폭력 학부모위원 양성과정을 통해 각 단위 학교로 파견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만하다. 가벼운 사건은 학교 내에서 교육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심각한 사건의 경우 이를 인권적으로 다루는 것이 가능한 전문전담기구가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권친화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교문화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문화를 바꾸려면 우선, 교사,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실제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학교에서 위기학생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교사와 학부모가 서로 의논 하에 대상 학생에게 상담과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학생이 직접 주체적으로 더불어 평화롭게 지내는 사회감수성을 키우기 위한 교육과정 또한 필요하다. 학교폭력은 학생개인에 대한 처벌적 문제로 접근하기 보다는, 사회·환경적 요소와 더불어 인권적이고 평화적인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이어야 하고, 그 과정을 경험하는 학생들에게 그 과정자체가 교육이 되어야 한다.

<h1>토 론 문</h1>	
----------------	---

▮ 이유미 (푸른나무 청예단, 학교폭력 SOS 지원단 단장)

I. 들어가며

푸른나무 청예단은 1995년 설립되어 전국학교폭력 상담전화 1588-9128을 최초로 학교 폭력 상담을 시작하여 다양한 예방활동 및 캠페인, 피해청소년 장학지원, 교육연구 사업 외에도 2007년부터는 ‘학교폭력SOS지원단’을 개소하여 본격적으로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출동 및 중재상담’을 진행하였으며 해당학생 및 보호자의 심리정서적 회복을 돕고 학교 폭력 사안으로 인한 갈등 발생 시에 당사자들 간의 입장이해를 돕고 치료비 합의 등 중재활동으로 학생들이 이후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당사자 뿐만 아니라 관계자들 간의 갈등에도 중립적인 개입을 진행해왔다.

이어 2012년에는 ‘학교폭력화해분쟁조정센터’를 개소하여 학교폭력 사안 발생 후 신속하게 개입 및 지원이 필요한 위기사례(자살시도 및 사망사례)개입, 해당 보호자 및 유가족 상담 및 지원, 피가해 청소년상담 및 가족캠프 등 위기사건에 대한 즉시적 출동과 개입으로 보호·치유·회복·적응의 중요성과 더불어 또래관계회복을 위한 ‘화해조정’, 학생 및 보호자 간의 갈등 및 치료비 등 문제해결을 조력하는 ‘분쟁조정’, 공정한 사안처리를 위한 ‘컨설팅 및 자문’에 이어 장기화되고 재발되는 피해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 통합지원’으로 청소년과 그 가족이 폭력으로부터 회복되고 자신의 건강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심리상담, 멘토링, 가족치유캠프, 의료 및 장학, 진로학습 등 다각적인 심적·물적 지원을 제공하였다. 올해는 프 교육부 및 대구시교육청과의 민관협약 사업,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및 행정자치부 공모사업, 서울가정법원 수강명령프로그램과 가족치

유แคม프, 푸른나무 청예단 자체 상담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다양한 현장의 조력자와 함께 학교폭력 상담 내담자에게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서울지방변호사회 ‘청소년지킴이 변호사단’과 학교폭력상담사가 함께 중립적인 입장에서 학교폭력 법률상담(2012~현재, 총 389건)¹⁾을 제공하였고, 상담 종결 후 ‘사후관리’로 문제해결 및 회복의 정도와 법적소송 진행여부를 조사하였다. 학교폭력의 특성상 법률적 검토뿐만 아니라 해당학생의 휴유증과 부적응 등을 최소화하고 갈등 및 분쟁을 경험하는 내담자의 문제해결능력 및 방법의 오류를 감소하기 위하여 변호사와 학교폭력 상담사가 함께 진행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한 기능이다. 2015년 학교폭력으로 인한 민형사, 재심 및 행정심판, 행정소송 전후의 내담자 사후관리 결과 총 92건 중(소송 전 및 진행 중 사례) 아직 소송을 진행하지 않았으나 소송욕구가 있는 58건 중 65%는 소송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관리의 결과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사건 후 해당 학생 즉 ‘나의 자녀’가 잘 지내고 있느냐 또는 ‘적절한 사과와 보상을 받았느냐’였다. 상대학생과의 관계가 회복되거나 개선된 사례의 경우엔 2차적인 법적 책임을 묻는 경우가 적다는 점이다.

하지만 매년 학생들의 휴유증 및 부적응을 예방하고 보호자 및 학교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2년~2015년 매년 5,000~7,000건(20,000~27,000회기)의 학교폭력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주요호소는 학생, 보호자, 학교 3주체 간의 ‘갈등 및 분쟁’으로 최근 가해측의 억울함 등과 더불어 가장 핫이슈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진행절차 즉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전/진행/후에 발생하는 내용들이었다. 피해학생 보호에 대한 미흡함과 소극적 대처에 대한 불신과 불만, 학교관계자의 초기대응 미숙에 대한 부당함, 학폭위 진행절차 중 불만, 모욕감, 불공정 등 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하신 내용들과 그리 다르지 않다. 몇 년 전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라면 당사자들 간의 갈등보다 학교측과의 분쟁이 증가한 점이다. 또한 조치 결정 후

1) 푸른나무 청예단(2016). 2012~2015년 학교폭력 법률상담 현황보고서, 2015년 학교폭력 법률상담 내담자 소송 진행보고서 참조함.

‘누구 하나’ 조치에 만족하지 않는 실정이다. 물론 만족스러웠다면 푸른나무 청예단에 상담요청을 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

이에 학교폭력의 ‘회복적’ 사안처리의 성공 및 실패요인들을 파악할 수 있었다. 불만인 다수 사례의 경우, 학교폭력 사안처리 초기부터 진행되는 동안 상대측과의 원만한 해결과 책임, 반성, 사과, 재발방지를 위한 약속이 상호 논의되지 못한 가운데 절차를 더 진행하면 할수록 갈등 및 분쟁은 증가하고 있었고 가해학생 및 보호자의 반성이나 화해나 보상에 대한 ‘말 한마디’ 조차 듣지 못한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입장에서 ‘사과 한마디 들은 적이 없다’, ‘아무도 책임져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무기력함을 자주 호소하고 있다. 반면에 학교폭력의 경중을 떠나서 해당학생 및 보호자 간의 서로 입장에 대한 이해와 공감 이 일어나도록 제 3자의 전문적 개입으로 ‘조정적 만남’(화해, 분쟁조정)이 진행 된 경우 적어도 사안이 갈등이나 분쟁, 민원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드물었으며 ‘조정적 만남’이 이루어진 동안 피해자 상처에 대한 사과와 적절한 보상약속이 있었으며 물론, 쌍방 합의금액의 큰 차이가 있을지라도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모든 조정이 성공적인 것은 아니나, 어떤 사례의 경우 해당학생들은 화해하고 보호자는 치료비 합의금액 의견 불일치로 인해 ‘분쟁조정’ 하다가 상호 법적인 절차로 정하자라고 임의적 합의를 하고 이외 학교측에 대한 문제제기나 조치에 대한 이의제기는 없었다. ‘분쟁조정’이 합의금액의 완결이 아니라 제3자의 전문적인 조정적·회복적 개입 하에 ‘안전한 대화’로 서로 조금씩 입장을 이해하는 진솔한 대화들이 이루어지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

실제 사전사후 척도 조사에서도 관련 학생들의 긍정 및 부정심리, 상대방에 대한 관계지각, 학교생활 적응, 사건처리 네 가지 영역에서 사전사후 변화²⁾를 알아본 결과 부정적 심리(답답함, 억울함, 화, 두려움, 창피함, 우울, 무기력함)가 감소하고 긍정적 심리(마음편함, 자신감, 희망)가 증가했다. 상대방에 대한 관계지각의 변화로는 이해, 신뢰는 증가하고 불편감은 감소했으며 상대방과의 화해욕구는 증가했다. 특히 피해측 입장에서 상대방에 대한 강한 처벌 및 고소고발 욕구 감소, 상대방에 대한 용서와 사건의 진실이 밝혀

2) 푸른나무 청예단(2016). ‘학교폭력 화해·분쟁·갈등조정 사전사후 효과성 검증’ 중 일부 발췌. 2015년 1~12월 동안 피·가해 학생, 학부모, 교사(259명)를 대상으로 심리, 대인관계, 학교생활적응, 사안처리 만족도 영역에서의 화해·분쟁·갈등조정의 현장서비스 효과성을 측정함.

졌다고 생각하는 정도는 증가했으나 반면에 치료비를 더 받고 싶은 욕구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금전적 배상 문제로 인한 양측 간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았으며 대부분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의 해소와 동시에 상대방에 대한 오해가 해소되고 이해가 향상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해측 입장에서도 부정적, 긍정적 심리변화는 유사하며 상대측에 대한 오해감소, 신뢰증가로 나타났고 사건처리 만족도와 관련하여 선도 조치와 지불한 치료비 배상이 적절하며 자신의 사건이 제대로 조사되어 사건의 진실이 밝혀졌고 피해측으로부터 용서받았다는 만족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II. 학교폭력 처리과정에서의 분쟁 완화방안 발표문에 대한 토론

발표 1. 학교폭력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현황과 사례, 발표 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 사건 처리의 문제점과 대안 발표를 통해 현재 학교폭력 사안의 분쟁현황과 법적 문제점과 개정방안을 통해 분쟁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학교폭력 사건의 처리절차에 법적 효과를 부여하기 위해서 피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규정의 보완성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 문제점과 제도적 개선 및 법제화 되어야 할 부분에 이르기까지 면밀하게 제안해주셨다.

학교폭력예방방법을 통한 피해학생의 보호와 피해를 최소화를 위해서 학교가 학교폭력 근절과 해결을 위한 중심에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학교폭력 사건의 처리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전담기구나 학폭위의 전문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권한을 강화하고 조치나 분쟁조정 결과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사법적 효력을 인정하여 학교 내 처리절차가 최종적인 처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된다고 하였다. 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 구제절차 없이 학폭위의 온전한 권한으로 최종적인 조치결정 및 이행력을 다 갖추는 기구로 개선하여 피가해 모든 조치에 대한 이의제기까지 다 담당하는 기구가 되어야 한다는 뜻 인가요?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방식 중 가해학생의 처벌이나 교사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니 관련법령도 형사법적 접근보다는 교육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하신 부분에 매우 동감하며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교육 조치의 사이에 관련학생의 ‘관계회복 및 개선’을 위한 기회마련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및 운영을 첨언하고 싶다.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회복적 관련학생 보호와 상처치유, 재발방지가 절실히 필요하다. 발표에 더불어 학교폭력 발생 후 피가해 학생들의 실태를 통해 분쟁완화를 위한 방안 모색에 참고할 점을 함께 고민해보고자 한다.

학교폭력 피해 당한 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3)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응답이 33.6%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가해학생에게 사과를 받았다’ 24.9%, ‘부모님에게 도움과 위로를 받았다’ 17.2%, ‘학교 선생님에게 도움과 위로를 받았다’ 13.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 2015년도 학교폭력 피해 후 발생한 일(다중응답)>

항목	단위: % 2015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33.6
가해학생에게 사과 받았다	24.9
부모님에게 도움과 위로를 받았다	17.2
학교 선생님에게 도움과 위로를 받았다	13.8
자치위원회에서 보호 조치를 받았다	1.3
가해학생에게 물질적인 보상(치료비, 위자료 등)을 받았다	1.3
병원치료 및 상담을 받았다	2.4
기타	5.6
합계	100

3) 푸른나무 청재단(2016). 2015 전국 학교폭력실태조사 연구보고서.

학교폭력 행한 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학교폭력을 가해한 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에 ‘피해학생에게 사과했다’는 응답이 35.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학교 선생님이 아셔서 꾸지람을 듣거나 처벌을 받았다’ 17.1%, ‘부모님께 꾸지람을 들었다’ 7.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응답은 33.7%로 가해 후 어떠한 조치 및 처벌도 받지 않았다는 응답이 전년대비 15.5% 증가했다.

<표 2. 2014-2015년도 학교폭력 가해 후 겪은 일(복수응답 가능)>

단위: %

항목	2014년	2015년	증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18.2	33.7	15.5↑
피해학생에게 사과했다	43.1	35.2	7.9↓
부모님에게 꾸지람을 들었다	5.6	7.3	1.7↑
학교 선생님이 아셔서 꾸지람을 듣거나 벌을 받았다	24.2	17.1	7.1↓
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 조치를 받았다	3.7	3.1	0.6↓
경찰서에 신고 및 조사를 받았다	1.5	1.0	0.5↓
법적인 처벌을 받았다	1.5	1.6	0.1↑
피해학생에게 물질적인 보상(치료비, 위자료 등)을 했다	2.2	1.0	1.2↓
합계	100	100	-

학교폭력을 가한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신이 다른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가한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에 ‘피해 학생에게 미안하다’는 응답이 37.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내 행동이 지나쳤다’ 23.3%, ‘후회한다’ 17.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 2014년, 2015년 학교폭력 가해 행동에 대한 인식>

단위: %

항목	2014년	2015년	증감
난 잘못하지 않았다	8.8	4.1	4.7↓
내 행동이 지나쳤다	8.3	23.3	15.0↑
피해학생에게 미안하다	40.4	37.7	2.7↓
부끄럽다	8.3	4.1	4.2↓
후회한다	26.9	17.1	9.8↓
아무 생각 없다	7.3	10.3	3.0↑
기타	-	3.4	-
합계	100	100	-

학교폭력 발생 시 또래관계 갈등, 분쟁 생길 경우 중재(화해) 역할의 필요성

2015년 전국 학교폭력실태조사 연구보고서(청예단, 2016)에 의하면 학교폭력으로 인해 또래관계 갈등, 분쟁이 생길 경우 다른 사람이 조정(화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66.0%(N=4,281)가 ‘필요하다’는 응답을 보인 반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34.0%(N=2,208)로 나타났다.

<표 5. 2015년 학교폭력 발생 시 또래관계 갈등 또는 분쟁 시 중재(화해) 필요성>

단위: %

항목	2015년
필요하다	66.0
필요하지 않다	34.0
합계	100

학교폭력 발생 시 손해배상(치료비, 금전적)·갈등, 분쟁 생길 경우 중재(화해) 역할의 필요성

또한 2014년 전국 학교폭력실태조사연구보고서⁴⁾에 의하면 학교폭력 발생 시 손해배상(치료비, 금전적)·갈등 또는 분쟁이 생겼을 경우 다른 사람이 중재(화해)해주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85.6%(N=4,920)가 ‘필요하다’는 응답을 보인 반면, ‘필요없다’는 응답은 14.4%(N=8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2014년 학교폭력 발생 시 **손해배상 갈등** 또는 분쟁 시 중재(화해) 필요성>

단위: %

항목	2014년
필요하다	85.6
필요하지 않다	14.4
합계	100

피해학생 보호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피해 후 심리정서적, 대인관계적 고통(피해경험자 중 65.0%), 자주 나타나는 휴유증으로 등교거부(피해경험자 중 52.1%), 복수충동(피해경험자중 71.4%), 자살생각 여부(피해경험자 중 40.7%, 여학생 51.5%, 중1 54.8%), 피해 당한 후 아무런 도움 요청 안함(피해자 경험 중 42.8%) 이중 도움요청하기 어려움으로 인한 반복되는 피해 재경험 등을 살펴볼 때 학교폭력예방법에 근거한 사안처리절차 및 조치에도 실패를 참고해서 학생 및 보호자의 불안도 감소하여야 한다. 도움을 미요청한 집단이 도움을 요청한 집단에 비해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고통, 등교거부, 복수충동, 자살생각 및 시도 여부 질문에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하여 재발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는 보호자는 학교 및 상대측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며 특히 학교를 대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등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하신 자료와 동일하다. 사소하고 경미한 사안일지라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진행 동안 분쟁이 더욱 심화되는 사례는 빈번하다.

4) 푸른나무 청예단(2015). 2014 전국 학교폭력실태조사 연구보고서.

등교거부는 매우 중요한 피해학생의 징후인데, 자세히 살펴보면 피해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큰 경우와 보복 당할까봐 두려움, 주변학생들에 대해 수치스럽고 반응이 두려운 사례 등으로 구분 할 수 있다. 피해학생에 대한 적극적 보호와 동시에 적절한 시기에 상대학생과의 ‘조정적 만남’과 ‘진솔한 대화’는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에게 가지는 심리적 불편감, 두려움, 불안, 화를 감소시키고 나아가 복수충동 및 극단적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가해학생 또한 피해학생에게 가질 미안함과 반성하는 태도를 충분히 표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관련해서 학교폭력 전담기구 및 학폭위의 판단에 따라 분쟁조정 절차에 회부하거나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하신 발표에 동의한다. 초기에 피해자 입장에선 화해라고 하면 싫어한다. 나는 ‘사과를 받고 싶다’라고 하나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화해했어요’라고 한다. 사실 단어사용도 초기엔 매우 조심스럽다. 화해는 피해학생의 상처치유와 가해학생의 가해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다. 물론 상호 두려움 없이 입장 차이와 견해와 감정을 솔직히 털어놓을 수 있는 ‘전문적인 화해조정’을 일컫는다.

III. 나가며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은 발생 직후부터 담임교사, 학교폭력전담기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재심 및 행정심판, 소송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단계가 많다. 분쟁완화를 방안 모색 중 무엇보다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피해학생에 대한 적극적 보호’여야 한다. 자칫 가해자 입장에서의 분쟁을 완화하는 방안이 우선시 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 피가해자 간의 균형적인 분쟁 완화를 위해서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의 단계별 발생하는 분쟁의 ‘불씨’를 살펴보고 그 모든 ‘불씨’가 학교폭력예방방법으로 인한 것은 아닐 것이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전/진행/후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분쟁은 발생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학교폭력 발생 초기부터 학교측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되며, 학교의 초기대응능력(학부모 연락 지연, 첫 부른 화해, 비동의 하에 대면시키기, 한 측 편들기, 공개사과 시키기, 학교 내 피가해 사실 공개하기 등)강화, 학교폭력 전담기구

의 조사능력(학부모 연락, 조사시간 및 방법, 자세 및 태도, 비밀엄수 등)강화,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의 공정성 확보(위원의 전문성 여부, 주관적 사실 해석, 당사자에게 상처 주는 말, 평가절하하는 태도, 낙인화, 진행절차 설명 미흡, 입장 충분히 표명할 기회 불충분 등)와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에서의 분쟁완화를 위하여 발표자님들의 제안과 덧붙여 학교폭력전담기구는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한 전문성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 및 기관 연계 활성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의무화,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한 민관협력 화해분쟁조정 기능 활성화, 학생들 간의 관계 회복과 개선을 위한 화해조정 기능 활성화, 재심기관의 일원화로 불필요한 행정처리를 막아 학교폭력으로 인한 갈등 및 분쟁을 예방하고 완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상담기관의 입장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불씨’가 되는 사례 중 내담자의 주요호소는 관계자 또는 상대측에 대한 불안, 두려움, 좌절감, 죄책감, 무기력, 심리적 불편감, 감정적으로 억울하고 화남, 불이익을 당할 까봐 두려움, 치밀어 오르는 분노, 관련정보 부족 및 오류, 문제해결능력 저하, 언어 및 비언어적 소통에 따른 오해와 갈등, 사실에 대한 왜곡 등 심리정서적 측면의 갈등과 사안처리와 관련한 진행절차, 합의 금액 차이, 조치 불이응 등 사실적 측면의 분쟁이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당사자들의 호소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사안처리 절차 진행하는 ‘사람’과 이에 관련 학생 및 보호자 또한 ‘사람’, 즉 ‘사람과 사람의 소통’이 어려운 것이었다. 공감하는 자세와 태도, 적극적 경청, 상대방에 대한 선입관 없는 이해와 인격적 존중이 가장 바탕이 되어야 학교폭력 해결과 회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 자리를 마련하신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님, 발표해주신 분들 그리고 학교폭력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경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학교폭력 처리과정에서의 분쟁 완화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 인 쇄 | 2016년 10월

| 발 행 | 2016년 10월

| 발행인 | 이 성 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 아동청소년인권팀

| 주 소 | (04551)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저동빌딩

| 전 화 | (02) 2125-9949 | F A X | (02) 2125-0929

| Homepage | www.humanrights.go.kr

| 인쇄처 | 도서출판 한학문화

| 전 화 | (02) 313-7593 | F A X | (02) 393-3016

| ISBN | 978-8-6114-508-4 93370

이 저작물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저작권을 전부 소유하지
아니한 저작물이므로 자유롭게 이용(무단 변경, 복제, 배포,
상업적인 용도 사용 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